

信託課稅制度的 合理化 方案

1998. 7

金 栽 鎭 · 洪 容 植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우리나라의 信託業은 1960년도 초에 信託法과 信託業法 등 신탁에 관한 기본법령의 정비 및 확립을 통해 새로운 발전 여건이 조성된 후 受託額의 規模와 信託關聯 商品의 種類面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1983년 말 1조 7천억원에 불과하던 信託 受託額이 1996년 말에는 100배가 넘는 178조 4천억원으로 급팽창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신탁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신탁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즉, 銀行의 受託庫 增大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信託商品과 은행의 短期性 貯蓄商品과의 차별화가 점차 희박해지고, 신탁 본연의 특성인 實績配當 商品 대신에 元本補填·確定配當 商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탁상품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金錢信託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인 危險度가 높으며 제도적인 면이 완비되지 않은 財産信託의 비중은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나라 신탁산업이 처한 현실이다.

최근 위와 같은 신탁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발맞추어 信託關聯 課稅制度도 기본방향의 설립과 아울러, 발전·보완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現行 信託課稅制度를 주요 外國의 信託課稅制度와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現行 信託課稅制度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租稅法規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栽鎭 博士와 漢城大學校의 洪容植 教授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연구의 진행과정중 資料提供 및 助言을 해 준 全國銀行聯合會 信託證券業務팀 황규봉 팀장, 韓一銀行 信託部 김선규 과장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

함에 있어서 자료수집과 분석에 수고한 洪忠基 연구원과 安相淑 연구조
원, 그리고 원고 校訂을 맡아준 出版課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本 研究
院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1998年 7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柳 一 鎬

目 次

I. 信託의 基礎概念과 分類	9
1. 信託의 概念	9
2. 信託의 關係人	11
3. 信託의 法的 特徵	15
4. 信託의 分類	30
II. 韓國 信託業의 歷史	37
1. 黎明期(1910~1930년)	37
2. 解放前 依用信託法(1931~1945년)	39
3. 信託業 暗黒期(1945~1960년)	40
4. 信託關聯 法令의 制定(1961~1968년)	41
5. 信託業 獨占時代(1968~1982년)	43
6. 信託業 兼營의 擴大(1983년~현재)	45
III. 主要國의 信託制度 및 稅制	58
1. 日本의 投資信託	60
2. 美國의 投資信託	74
3. 英國의 投資信託	82
4. 英國·美國 投資信託의 比較	91
IV. 課稅原則과 信託課稅理論	95
1. 實質課稅의 原則	95
2. 信託所得 課稅理論	100

V. 信託課稅의 現況	107
1. 信託商品別 課稅現況	107
2. 信託稅制의 現況	114
VI. 信託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21
1. 所得稅 및 法人稅	121
2. 相續稅 및 贈與稅	133
VII. 結論 및 提言	142
參考文獻	149

表 目 次

〈表 I-1〉金錢信託과 銀行預金의 比較	31
〈表 II-1〉各 信託會社 및 資本金(1930年 6月 30日 現在)	38
〈表 II-2〉各種 信託의 受託推移	39
〈表 II-3〉再開 後 信託	42
〈表 II-4〉5個 市銀 兼營 後 受託狀況	42
〈表 II-5〉當局의 主要 施策	43
〈表 II-6〉投資信託의 發展	44
〈表 II-7〉信託制度 主要 變更內容	46
〈表 II-8〉不動產 信託會社	46
〈表 II-9〉1984年 以後 信託制度 關聯 主要事項	49
〈表 III-1〉英國의 Unit Trust와 Investment Trust의 比較	86
〈表 III-2〉美國과 英國의 信託種類 比較	92
〈表 III-3〉美國과 英國의 信託課稅 比較	94
〈表 IV-1〉信託導管理論과 信託實體理論의 比較	106
〈表 V-1〉特定金錢信託과 合同運用信託의 比較	111
〈表 VI-1〉信託元本의 利益 및 信託收益의 利益에 對한 課稅區分	125

I. 信託의 基礎概念과 分類

1. 信託의 概念

信託이란 자기 재산을 믿을 수 있는 他人에게 맡겨서 자기 또는 受益者를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財産管理制度를 말한다. 信託制度는 중세 초기 게르만민족의 유산관리 방법이었던 잘만(Salman)제도¹⁾가 중세 영국으로 건너가서 轉化되어 봉건적인 의무의 회피 및 토지의 양도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유스(use)제도²⁾에서 시작되었다는 학설이 유력하다.

그후 英國의 信託制度가 美國으로 건너와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재산관리가 전문화·상업화됨에 따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변화하여, 오늘날에는 재산의 관리 및 증식의 목적으로 信託制度가 이용되고 있다.

-
- 1) 잘만(Salman)이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받아 양도인의 지시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을 하는 재산보관자를 말하는데, 본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전쟁이나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전사나 병사한 경우에는 잘만에게 양도한 토지를 교회에 기증하도록 하고 만약 살아서 돌아오면 토지를 반환받는 유언에 의한 토지 처리제도이다.
 - 2) 유스(use)는 형식적으로는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계약이 따르는 계약이다. 이는 英國이 노르만인에 의해 정복된 이후 게르만민족의 관습법인 잘만의 도입으로 발달한 것으로서, 13세기 초 성프란시스코수도회가 英國에 전파된 이후 敎義인 淸貧에 의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자 신자들은 유스를 이용하여 토지를 수도회와 수도자가 거거하는 도시에 양도하고 그 도시는 양도받은 토지를 이용하여 올린 수익으로 수도회의 재정적인 기초를 확보하였다.

가. 財産管理方法으로서의 信託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기간의 여행이나 입원의 경우, 재산이 소유주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위치한 경우, 상속인이 어려서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산의 관리를 전문관리인에게 위탁하여 소유주 본인 또는 제3의 受益者를 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보전토록 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신탁이다.

나. 財産增殖方法으로서의 信託

사유재산의 소유형태가 종래의 토지 위주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대출과 투자를 통한 財産增殖의 方法으로 信託制度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를 적극적 형태의 신탁이라 한다. 이러한 신탁은 委託者가 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의 미비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金錢信託의 경우 個人年金信託, 老後生活年金信託, 積立式目的信託, 家計金錢信託, 開發信託, 國民株信託, 企業金錢信託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신탁의 신상품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다.

2. 信託의 關係人

信託關係人은 委託者, 受託者, 受益者, 信託管理人 및 信託財産의 管理人으로 구성된다.

가. 委託者(Trustor)

委託者란 受託者와 信託을 설정하고 특정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위하여 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 또는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委託者는 信託행위의 당사자로서 信託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信託행위를 취소한 때의 信託財産은 委託者에게 귀속된다. 信託이 終了된 경우에 信託財産의 귀속권리자가 信託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다(信託법 제60조).

委託者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① 受託者 辭任에 대한 동의권³⁾
- ② 受託者 해임요구권⁴⁾
- ③ 서류의 열람, 사무처리의 설명요구권⁵⁾
- ④ 新受託者의 선임요구권⁶⁾
- ⑤ 信託管理人의 선임요구권⁷⁾
- ⑥ 信託財産의 불법한 강제집행과 경매에 대한 이의권⁸⁾
- ⑦ 信託違反으로 인한 손실보전 또는 信託財産의 회복청구권⁹⁾

3) 信託법 제13조

4) 信託법 제15조

5) 信託법 제34조

6) 信託법 제17조

7) 信託법 제18조

8) 信託법 제21조 제2항

9) 信託법 제38조

⑧ 신탁사무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처분의 요구권¹⁰⁾

나. 受託者(Trustee)

受託者란 委託者로부터 재산권의 이전 또는 처분을 위임받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자를 말한다. 受託者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자이어야 하고 재산의 관리처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타인의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受託者의 직무권한은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결정되며 신탁법은 受託者의 권리의무와 법원의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受託者는 이러한 규정과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信託財産에 대하여 보존, 이용, 개량, 처분, 소송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受託者의 의무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作爲義務과 무엇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소극적인 不作爲義務로 규정되어 있으며, 受託者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忠實義務

受託者는 委託者 또는 受益者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信託財産의 관리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信託財産과 受託者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受託者는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義務로 信託財産을 관리하여야 하고¹¹⁾,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享受하지 못하며¹²⁾, 그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자기의 固有財産과 分別하여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¹³⁾,

10) 신탁법 제64조 제2항 3

11) 신탁법 제28조

12) 신탁법 제29조

13) 신탁법 제30조

信託財産을 固有財産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제한¹⁴⁾ 등이 있다. 만약 受託者가 신탁의 本旨에 위반하여 信託財産을 처분한 때에는 受益者는 상대방 또는 轉得者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¹⁵⁾.

2) 自己執行의 義務

受託者는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受益者의 동의를 얻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¹⁶⁾. 이는 신탁업무가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법률관계이므로 신탁사무를 함부로 타인에게 대행시킬 수 없다는 自己執行의 의무와 타인에게 신탁사무를 위임해서는 안된다는 委任禁止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受託者의 질병, 장기외유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受益者의 동의를 얻어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善管注意義務

受託者는 委託者의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신탁설정시 정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직무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계약시에 정할 수는 없으며 직무수행상 구체적인 사항은 受託者의 재량권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탁법 제28조에서는 「受託者는 신탁의 本旨에 따라 선량한

14) 신탁법 제31조 제1항

15) 신탁법 제52조 제1항

16) 신탁법 제37조

관리자의 注意로써 信託財産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受託者는 신뢰받는 타인 재산의 관리자이므로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의 注意義務로는 부족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義務가 필요하다.

다. 受益者(Beneficiary)

受益者란 신탁행위로부터 신탁이익을 享受하는 자를 말한다. 신탁법상 受益者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受益者가 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社團도 受益者가 될 수 있다. 受益者의 기본권리로는 불법한 강제집행 및 경매에 대한 이의권¹⁷⁾과 신탁위반시 損害賠償 또는 信託財産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¹⁸⁾가 있다. 이외에도 受益者에게는 受託者로 하여금 信託財産을 철저히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된 다음과 같은 감독권이 있다.

- ① 受託者의 해임청구권¹⁹⁾
- ② 信託管理人의 선임청구권²⁰⁾
- ③ 信託事務의 처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청구권²¹⁾
- ④ 信託財産의 관리방법의 변경청구권²²⁾
- ⑤ 信託事務의 인계에 대한 입회권²³⁾

17) 신탁법 제21 제2항

18) 신탁법 제38조와 제39조

19) 신탁법 제15조

20) 신탁법 제18조

21) 신탁법 제34조

22) 신탁법 제36조

23) 신탁법 제50조

라. 信託管理人

信託管理人이란 受益者가 특정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 受益者의 이익을 보호하고 受託者의 신탁업무의 처리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은 利害關係人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信託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첫째, 公益信託의 경우처럼 受益者가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私益信託에서 受益者가 되는 자격 또는 적격요건은 정하여져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일정시점에서는 受益者가 제한되어 있지만 受益者로서의 적격요건이 일정한 지위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지위의 상실, 탈퇴와 가입 등으로 受益者의 대상이 변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信託管理人을 선임한다. 둘째, 장래에 태어나는 자녀나 미래에 설립될 법인의 경우처럼 受益者가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信託管理人을 선임한다.

마. 信託財産의 管理人

受託者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新受託者가 취임하기까지의 受託者의 일시적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를 信託財産의 관리인이라 한다. 信託管理人은 불특정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受益者를 위하여 수익권 및 신탁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인 반면, 信託財産의 관리인은 臨時受託者로서 信託財産을 관리하는 자이다.

3. 信託의 法的 特徵

신탁이란 信託設定者(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委託者가 특정의 재산권을 受託者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受託者로 하여금 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²⁴⁾. 신탁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신탁관계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信託財産, 信託目的, 受益者 등 3요소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신탁은 委託者와 受託者간의 계약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계약신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하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口頭로도 설정할 수 있다²⁵⁾. 신탁법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委託者가 신탁할 수 있는 것은 재산권이다. 신탁할 수 있는 재산권은 구체적으로

- 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각종 물권, 채권 및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권을 포함하며,
- ② 채권 등의 적극재산만을 포함하고 채무 등 소극재산²⁶⁾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信託財産은 委託者로부터 受託者에게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 ④ 특별법상의 신탁제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

신탁을 규정하는 법률로는 민법의 특별법인 信託法(1961. 12. 31. 제정)과 상법의 특별법인 동시에 信託法の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信託業法(1961. 12. 31. 제정), 擔保附社債信託法(1962. 1. 20. 제정)과 證券投資信託業法(1969. 8. 4. 제정)이 있다.

현행 信託法은 日本의 信託法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영미신탁법을 모체로 함과 동시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민법과의 조화를 위해 신탁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인 신탁행위는 原因行爲와 處分行爲로 구분되어 해석되고 있다. 첫째, 原因行爲는 委託者가 受託者로 하여금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의무

24) 신탁법 제1조

25) 영미법에서는 委託者가 재산권을 신탁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委託者 자신이 受託者가 된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신탁이 성립가능하나, 우리나라의 현행 신탁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6)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 또는 입주전세금 등 반환채무를 수반한 재산을 말한다.

를 부담케 하는 채권행위이다. 둘째, 處分行爲란 委託者가 受託者에게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하는 물권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탁행위의 객체인 信託財産은 受託者에게 귀속되나, 실질적으로 受託者는 정해진 信託目的에만 따라서 信託財産을 관리·처분할 수 있을 따름이다²⁷⁾.

또한 信託制度는 민법상 인정된 여러 가지 재산관리제도와 비교된다. 민법상 인정된 제도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財産管理人²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위한 後見人²⁹⁾,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親權者³⁰⁾, 유산의 분배와 유언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遺言執行者³¹⁾와 당사자들의 법률행위에 의한 委任³²⁾ 및 任置³³⁾가 있다. 그러나 신탁은 민법상의 재산관리제도와 달리 해당 재산권의 명의를 재산의 관리를 맡은 자(受託者)에게 이전되므로 受託者는 受託財産을 자기재산과 동일하게 관리·처분할 수 있으며, 재산권의 이전시에 不動產移轉登記나 주식 및 사채의 名義改書를 하여 제3자에게 信託財産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가. 信託할 수 있는 財産

委託者가 信託目的으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信託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산권, 즉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면 된다. 따라서 민법상의 각종 물권이란 채권은 물론이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7) 英美의 信託法에서는 대륙법계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복합적인 개념이 없으며, 신탁행위를 委託者와 受託者간의 법률행위인 계약관계로 보지 않고 受託者와 受益者와의 信託關係(fiduciary relationship)로 보고 있다(洪裕碩·李明洙, 『信託의 理論과 實務』, p. 75).

28) 민법 제22조

29) 민법 제928조

30) 민법 제909조

31) 민법 제1093조

32) 민법 제680조

33) 민법 제693조

저작권 등의 무형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換價할 수 있으면 신탁할 수 있으며, 광업권, 어업권과 같은 準物權이나 특별법상의 공단재단, 광업재단 등과 같은 각종 재단도 신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또 信託財産은 委託者로부터 受託者에게 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信託財産의 特性

信託財産은 委託者の 신탁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가 受託者에게 귀속되지만, 신탁행위는 委託者和 受託者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信託財産에 대한 受託者の 권리행사는 구체적인 信託目的을 실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상의 제한 내지는 의무가 수반된다³⁴⁾.

따라서 受託者는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義務로 信託財産을 관리하여야 하고,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하며, 그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자기의 固有財産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信託財産을 固有財産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제한 등이 있으며, 만약 受託者가 신탁의 本旨에 위반하여 信託財産을 처분한 때에는 受益者는 상대방 또는 轉得者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信託財産은 형식적으로는 受託者の 명의로 귀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受託者の 자유로운 지배에 따르지 아니하고 信託目的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그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34) 信託法 제28조 전단

다. 信託財産의 獨立性

信託財産의 獨立性은 信託財産이 형식적으로는 受託者에게 귀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受託者의 固有財産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임을 나타낸다³⁵⁾. 受託者는 受益者를 위하여 信託財産을 관리하는 代理人에 불과하다. 현행 信託法에서는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信託財産의 相計禁止

민법상³⁶⁾으로는 信託財産에 속하는 채권과 受託者 개인의 채무는 동일한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서로 相計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受託者의 固有財産 또는 수탁자명의로 된 다른 信託財産과는 독립된 별개재산이므로 그 귀속주체가 다르다. 따라서 信託財産에 속하는 채권과 信託財産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受託者의 固有財産 또는 受託者의 명의로 된 다른 신탁재산상의 채무)는 형식상으로는 상계상황 즉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성립되었다라도 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³⁷⁾.

2) 受託者의 債權者로부터의 強制執行 등 禁止

委託者가 신탁을 설정하기 이전에 抵當權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와 信託財産을 보수한 업자의 비용청구권 등과 같이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信託財産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나 경매를 할 수 없다. 즉, 受託者 개인에 대한 채권자는 受託者 개인

35) 배동필, 「신탁재산귀속소득과 그 과세이론」, 『서은조사』, 1996년 여름호, pp. 32~36.

36) 민법 제492조

37) 信託法 제20조

의 固有財産에 대한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수탁자명의로 된 信託財産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信託財産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하는 때에는 委託者와 그 相續人, 受益者 및 受託者는 民事訴訟法 제50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³⁸⁾.

信託財産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금지하는 것은 信託財産의 獨立性에 의하여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과 구분되어야 하며 受託者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⁹⁾.

3) 受託者의 破産時 破産財團에서의 分離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受託者의 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受託者의 채권자가 信託財産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론이다⁴⁰⁾.

4) 信託財産의 不混同

민법상 混同의 原則⁴¹⁾에 의하면 信託財産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 受託者 개인 또는 다른 信託財産의 受託者로서 그 권리의 목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때, 예를 들면 信託財産이 地上權일 때 受託者가 그 地上權의 목적물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형식상 모두 受託者의 명의이므로 민법상의 혼동의 원칙에 의하여 信託財産인 地上權이 소멸하게 된다.

38) 信託法 제21조

39) 그러나 受益者의 채권자는 신탁수익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信託財産 자체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

40) 信託法 제22조

41) 민법 제191조

그러나 信託財産의 실질적인 법 주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信託財産인 地上權이 受託者 개인에게 귀속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혼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信託財産의 불혼동의 원칙은 信託財産의 보전상 당연한 이론으로서 민법상의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을 배제한 규정이다. 즉, 이는 민법 제191조의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5) 信託財産의 物上代位性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受託者가 둘 이상인 신탁을 수탁할 경우에는 그 信託財産 사이에도 각각 구분되어 獨立性을 가진다. 따라서 受託者가 信託財産의 관리, 처분, 멸실,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은 각각 그 信託財産에 속한다. 즉 受託者가 얻은 재산은 모두 信託財産을 구성한다⁴²⁾. 예를 들어 信託財産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 보험금 및 보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信託財産에 포함된다.

6) 受託者의 相續財産에서의 除外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受託者가 사망하였을 때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과는 별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탁은 受託者에 대한 개인적인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受託者가 사망하면 受託者란 지위는 受託者의 相續人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⁴³⁾.

42) 信託法 제19조

43) 信託法 제25조와 제11조

7) 信託財産의 添附

信託財産과 受託者의 固有財産 또는 수탁자명의로 된 다른 信託財産은 각각 獨立性을 가지므로, 이런 재산이 相互 附合⁴⁴⁾, 混合⁴⁵⁾, 加工⁴⁶⁾으로 信託財産이 소멸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공의 경우 원재료의 소유자가 가공으로부터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공으로부터 생긴 물건이 원재료보다 현저하게 가치가 높을 때에는 그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9조). 그러나 위의 단서조항으로,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라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민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8) 占有瑕疵⁴⁷⁾의 承繼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점유에 관하여 委託者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하게 된다⁴⁸⁾. 신탁의 설정에 따라 委託者의 재산은 受託者가 점유한다. 그러나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관리기관으로서 점유하는 데 불과하므로 委

44)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동산을 결합한 후에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있을 정도로 결합된 것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256조).

45) 별개의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을 혼합 또는 융화하여 소유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258조).

46) 타인의 원재료에 공작을 가하여 본래의 동산과는 동일성을 갖지 않는 새로운 동산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소유자가 가공으로부터 생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공으로부터 생긴 물건이 원재료보다 현저하게 가치가 높을 때에는 그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9조).

47) 일반적으로 점유에서 善意·無過失·平穩·公然·繼續 등의 어느 하나가 欠缺한 것을 말한다.

48) 信託法 제9조 제1항

託者의 占有瑕疵도 승계한다. 따라서 점유에 하자가 있는 委託者가 신탁 행위를 통하여 受託者에게 하자가 없는 점유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자가 없어진 점유물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하도록 점유의 하자를 승계하게 한다. 즉, 민법⁴⁹⁾에서는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지만, 信託法은 受託者가 委託者의 점유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委託者로부터 점유 이전에 하자가 없더라도 委託者의 점유하자는 受託者에게 승계된다. 이 규정은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도 준용된다⁵⁰⁾.

信託財産의 '獨立性'의 인정 여부에 관해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학설이 나뉘어져 있다. 첫째, 信託財産이 受託者에게 귀속하는 것은 법률상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受益者임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둘째, 受託者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관적 지위에 있을 뿐이고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固有財産으로부터도 독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 債權說

채권설은 신탁행위를 委託者가 受益者를 위하여 목적재산을 受託者에게 이전하는 物權行爲와 受託者가 신탁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債權行爲로 구성되는 법률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는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권한에 대하여 보통법(commom law)상의 권한(legal title)을 가지며, 受益者는 형평법(equity law)상의 권한(equitable title)을 갖는다는 영미법계상의 신탁법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49) 민법 제199조

50) 信託法 제9조 제2항

즉, 信託財産은 委託者의 처분 또는 이전행위로 委託者의 영역을 떠나 受託者에게 완전하게 귀속하고, 受託者는 信託財産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며,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信託本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에 그치지만, 受益者는 信託財産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질 뿐 信託財産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信託法 제19조 내지 제25조의 규정들은 信託財産이 受託者에게 귀속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창설적 조항으로서 受益者의 이익보호를 위한 실제법상의 안전판으로 이해된다.

나) 第3者를 위한 契約說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은 신탁행위를 委託者와 受益者간의 대가관계를 기초로 하여 受益者에게 수익권을 부여하기 위한 委託者와 受託者간의 계약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신탁이라는 특별법상의 전형계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이가 있다.

이 견해는 거래계의 실상을 고려하여 委託者와 受益者간의 대가관계를 신탁행위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상 채권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信託財産의 獨立性에 대해서는 채권설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實質的 法主體說

신탁행위의 기초가 되고 있는 신임관계는 委託者와 受託者간의 개인관계(신탁의 개인적 요소)에 불과할 뿐이며, 신탁행위의 본체는 신탁목적에 따라 통일성과 獨立性을 부여받은 信託財産을 중심으로 하여 受託者의 관리의무와 受益者의 信託財産에 대한 물적 상관관계에 내포하는 청구권을 양측으로 하여 구성되는 객관적 관계(신탁의 超個人的 요소)

라는 인식에서 信託財産이 실질상 독립의 주체가 되고 受託者는 그 기관인 지위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信託財産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受託者가 얻는 재산은 信託財産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日本 信託法 제 14조⁵¹⁾를 그 논거로 한다. 즉, 동 조항은 信託財産이 신탁목적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결합된 동일성과 개개의 재산변동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동일성을 가지며, 따라서 受託者의 固有財産으로부터 獨立性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信託財産의 實質的 法主體性을 지탱해주는 근거 법규로서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實質的 法主體說에서는 信託財産이 受託者에게 귀속하는 것은 외관상의 모습일 뿐, 그 실질은 독립적인 법주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인정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행 信託法 제 19조 내지 제 25조의 규정들은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고려하여 注意的으로 법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信託制度는 英國의 유스제도에서 기원하며, 우리나라의 信託法은 영미법계의 信託法을 대륙법체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日本의 信託法을 그 대로 계승한 것이다. 한편, 日本 신탁법안 설명서에서는 信託法 제 14조에 대해 「信託財産은 하나의 자산(Fund)을 위해 설혹 형태가 변해도 그 자산에 속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여 입법자의 의도가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인정하는 데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信託制度의 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信託法 제 19조 내지 제 25조의 규정은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른 受益者利益 保護條項이라기보다는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전제로 한 注意的條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實質的 法主體說은 信託財産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51) 한국의 현행 信託法 제 19조에 해당됨.

라. 信託財産의 法人性

信託財産은 제도적으로 受託者의 固有財産으로부터 구분되어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信託財産의 財團性 여부와 法人性 여부를 검토하여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財團性 與否

민사법상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의사를 사원총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단체를 社團이라고 하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 하여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를 財團이라고 한다.

信託財産은 사람의 결합이 아니며 사원은 물론 사원총회도 갖지 아니하므로 社團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信託財産은 신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으로서 受託者가 재산출연자의 출연취지에 따라 信託財産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信託財産의 법적 성격은 財團의 성질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2) 法人性 與否

법인이란 법률이 그 입법목적상 정책적으로 어떤 단체에 대해 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信託財産의 法人性 여부는 그 법률이 信託財産에 대해 어떠한 목적적 인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정책론상의 문제이지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信託財産이 법인이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상 信託財産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므로

사법상 信託財産은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信託財産의 法人性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信託財産이 법인은 아니지만 受託者의 固有財産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원천징수목적상 信託財産을 法人으로 擬制하는 公法上의 규정도 있어 본 연구의 목적상 이에 대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의 실질 즉, 목적재산은 존재하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을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도 등기능력⁵²⁾과 당사자능력⁵³⁾을 가지며, 명예권·명칭권과 같은 인격권도 향유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사회생활상의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등기하면 그 재산권을 소유하고, 그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능력을 가지며,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와 책임도 함께 부담한다. 信託法 제3조는 信託財産이 등기된 경우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信託財産 자체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탁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義務로 신탁사무를 하도록 한 제28조와 信託財産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43조의 규정, 그리고 제19조의 물상대위성은 受託者가 信託財産의 소유자가 아니라 信託財産의 기관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信託財産의 獨立性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제22조의 규정과 불혼동·부합·혼화·가공 등을 규정한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 그리고 신탁행위로 인한 채무는 信託財産 자체의 부담임을 규정한 제32조의 규정 등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52)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53) 민사소송법 제48조

마. 信託의 公示

受託者는 信託財産을 자기의 固有財産과는 분리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설정시 정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 受託者가 신탁의 목적에 위반하여 信託財産을 불법으로 처분하였을 때나 信託財産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受益者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信託財産의 원상회복 및 그 손실의 배상책임이 있으며⁵⁴⁾ 受益者는 受託者의 불법처분의 상대방 또는 轉得者에 대해 당해재산이 信託財産임을 주장하여 受託者의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追及效를 인정하고 있다⁵⁵⁾. 이러한 追及效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당해재산이 信託財産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밝혀야 한다⁵⁶⁾. 즉, 受託者에게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였다는 公示뿐만 아니라 信託財産임을 公示하여야 한다.

신탁의 公示는 受託者에게 재산권의 이전에 따른 ‘一般公示(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 이외에도 受託者가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권이 信託財産임을 알려주는 ‘特別公示(신탁등기)’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공시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受託者를 登記權者로 委託者를 登記義務者로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공시한다⁵⁷⁾.

바. 信託의 終了

信託의 終了란 신탁행위로 정한 이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신탁관계를 존속시켜야 하는 법적

54) 信託法 제38조

55) 信託法 제52조

56) 信託法 제3조 제1항

57) 부동산등기법 제120-1조

근거를 상실하고 신탁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⁵⁸⁾.

신탁의 종료원인은 신탁의 목적 및 그 존재이유와 관련된 기본적인 종료사유인 절대적 종료와 신탁관계당사자 또는 법원이 일정한 要件下에서 신탁을 終了시키는 상대적 종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종료는 첫째, 신탁행위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둘째, 委託者가 신탁이익을 전부 향수한 때 셋째, 信託目的을 달성 또는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넷째, 受益者가 수익을 거절한 때에 발생한다.

상대적 종료는 첫째, 受託者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受託人인 법인이 해산한 때⁵⁹⁾ 둘째, 신탁행위에 의하여 특정자격에 기하여 受託者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⁶⁰⁾ 셋째, 신탁행위에서 受託者의 사임을 정한 경우와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受託者의 지위를 사임한 때⁶¹⁾ 넷째, 受託者가 그 임무에 위반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유로 법원이 委託者, 그 相續人 또는 受益者의 청구에 의하여 受託者를 해임한 때에 발생한다⁶²⁾.

58) 信託法 제55조

59) 信託法 제11조

60) 信託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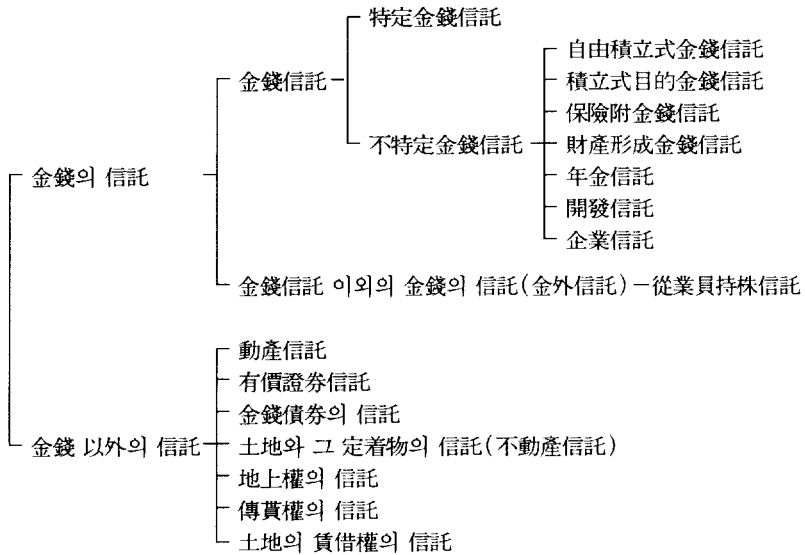
61) 信託法 제13조 제2항

62) 信託法 제15조

4. 信託의 分類

신탁은 신탁의 목적, 발생원인, 委託者와 受益者의 관계 등 구분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가. 信託財産 種類에 따른 分類



1) 金銭의 信託

신탁의 인수 당시 금전으로 수탁한 신탁을 말한다. 금전의 신탁은 金銭信託과 金銭信託 이외의 金銭의 信託(金外信託)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 金銭信託

신탁의 인수시에 信託財産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종료시 受益者(혹은 委託者)⁶³⁾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金銭信託은 그 운용방법에 따라서 特定金銭信託과 不特定金銭信託으로 나누어지며, 不

特定金錢信託은 또 다시 委託者의 信託목적과 受託者의 運用방법에 따라 세분화된다. 特定金錢信託은 金錢信託 중에서 委託者로부터 信託財産의 運用방법과 運用조건을 지시받아서 運用하는 信託을 말하며, 不特定金錢信託은 信託財産의 運用방법과 運用조건을 受託者에게 위임하는 信託을 말한다.

이 金錢信託은 은행의 預金과 유사하나 그 성질에 있어서는 銀行預金과 여러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表 I - 1〉 金錢信託과 銀行預金の 比較

	金 錢 信 託	預 金
1. 재산관계	信託財産	固有財産
2. 계약관계인	委託者, 受託者, 受益者(3면관계)	예금자, 은행(2면관계)
3. 계약의 성질	信託행위(계약, 유언)…信託法	소비임치계약…民法
4. 運用방법	信託계약 및 법령범위 내에서 정함	제한없음
5. 이익분배	運用수익 - 信託보수 = 배당(실적배당)	약정이자(확정이율)
6. 배당률(이율)	예정배당률	약정이율
7. 원본보전, 이익보존	원칙적으로 원본 및 수익에 대해 보증할 의무가 없음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 의무가 있음
8. 자금의 성질	중장기성 자금	단기성 자금
9. 특약	가능	불가능
10. 감독	信託業法(재정경제부)	銀行法(은행감독원)

나) 金錢信託 以外的 金錢의 信託(金外信託)

金錢信託 이외의 금전의 信託이라 함은 信託인수시에는 금전으로 수탁을 받지만 信託종료시에는 運用하는 現상대로 委託者(혹은 受益者)에게 信託財産을 지급하는 信託(통상 金外信託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金外信託은 信託계약종료시에 現금으로만 지급될 수도 있고, 現물(주식, 채권 등)로만 지급될 수도 있으며, 現금과 現물이 혼합되어 지급될 수도

63) 信託의 이익을 제3자가 수령하도록 한 他益信託의 경우 受益者에게 교부되며, 自益信託이면 委託者 본인에게 교부됨.

있다. 만약 신탁종료시에 현금만으로 지급된다면 特定金錢信託과 다를 바가 없다.

金外信託도 特定金錢信託과 마찬가지로 여러 委託者의 信託財産을 합동하여 운영할 수 없고, 단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金外信託은 최저수탁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고, 委託者의 자격제한이 없다.

2) 金錢 以外の 信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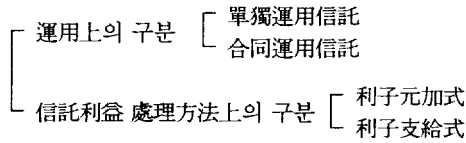
금전 이외의 신탁은 受託者가 신탁을 인수할 때에 수탁하는 재산이 금전 이외의 재산(증권·동산·부동산)을 수탁하며, 신탁종료시 信託財産을 운용현황 그대로 受益者(혹은 委託者)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有價證券信託은 유가증권을 信託財産으로 수탁하여 관리하거나 운용하여 신탁이 終了한 때에 信託元本 및 運用收益을 受益者(혹은 委託者)에게 교부하는 信託制度이다. 金錢債權信託은 금전의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즉, 금전채권을 信託財産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하고 금전채권을 受領 또는 推尋하여 신탁이 終了할 때에 受益者에게 교부한다. 신탁회사는 委託者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아 채권자가 되어 금전채권의 수령은 물론 시효중단·독촉 등 채권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金錢債權信託은 信託財産에 따라 推尋債權信託, 保險債權信託으로 구분된다. 動產信託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信託財産으로 수탁하여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하는 信託制度이다. 不動產信託은 토지와 그 정착물(부동산)을 信託財産으로 수탁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는 信託制度이다. 부동산신탁의 信託財産은 전답·대지·임야·잡종지 등과 건물 및 일부의 수목도 포함된다.

- 가) 動產信託 : 인수당시 동산으로 수탁한 신탁
- 나) 有價證券信託 : 인수당시 유가증권으로 수탁한 신탁
- 다) 金錢債權의 信託 : 인수당시 금전채권으로 수탁한 신탁
- 라) 土地와 그 定着物의 信託(不動產信託) : 인수당시 토지 또는 그

정착물로서 수탁한 신탁

- 마) 地上權의 信託 : 인수당시 지상권으로 수탁한 신탁
- 바) 傳貰權의 信託 : 인수당시 전세권으로 수탁한 신탁
- 사) 土地의 賃借權의 信託 : 인수당시 토지의 임차권을 수탁한 신탁

나. 信託財産의 取扱上의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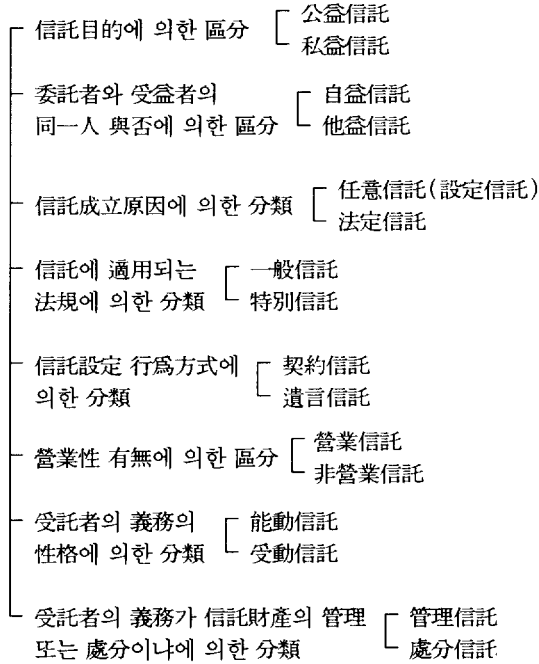
1) 運用上의 區分

- 가) 單獨運用信託 : 受託財産을 위탁자별로 개별운용하는 신탁
- 나) 合同運用信託 : 조건이 같은 信託財産에 속하는 金錢을 공동자금으로 하여 합동체로 운영하는 신탁

2) 信託利益 處理方法上의 區分

- 가) 利子元加式 : 신탁이익을 신탁계산기간마다 원본에 가산하는 신탁
- 나) 利子支給式 : 신탁이익을 신탁계산기간마다 또는 정기적으로 受益者에게 지급하는 신탁

다. 信託의 目的 및 契約形態에 따른 分類



1) 信託目的에 의한 區分

가) 公益信託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제사,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나) 私益信託 : 委託者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2) 委託者와 受益者의 同一人 與否에 의한 區分

가) 自益信託 : 信託財産에서 생기는 이익을 委託者 자신이 취득하는 신탁

나) 他益信託 : 信託財産에서 생기는 이익을 委託者 이외의 제3자가 취득하는 신탁

3) 信託成立原因에 의한 分類

가) 任意信託(設定信託) :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신탁. 신탁설정 행위의 형식에 따라 다시 계약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된다.

나) 法定信託 :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성립되는 신탁

4) 信託에 適用되는 法規에 의한 分類

가) 一般信託 : 일반법인 信託法이 적용되는 민사신탁

나) 特別信託 : 특별법인 信託業法상의 營業信託, 證券投資信託業法상의 證券投資信託, 擔保附社債信託法상의 擔保附社債信託을 말한다.

5) 信託設定 行爲方式에 의한 分類

가) 契約信託 : 委託者가 생전에 受託者와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신탁

나) 遺言信託 : 委託者의 유언으로 설정된 신탁

6) 營業性 有無에 의한 區分

가) 營業信託 : 受託者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신탁

나) 非營業信託 : 受託者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신탁

7) 受託者의 義務의 性格에 의한 分類

가) 能動信託 : 신탁자가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信託財産을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신탁

나) 受動信託 :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형식적인 명의자일 뿐, 信託財産을 적극적으로 관리 또는 처분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신탁

8) 受託者의 義務가 信託財産의 管理 또는 處分이나에 따른 分類

가) 管理信託 : 受託者가 信託財産의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⁶⁴⁾

나) 處分信託 : 受託者가 信託財産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⁶⁵⁾

64) 이를 위반하여 信託財産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受託者는 信託財産의 원상복구책임이 있다(信託法 제57조).

65) 그러나 信託財産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별로 없으며 이와 같은 신탁은 신탁회사의 부수업무인 대리사무로서 인수하는 예가 많다.

II. 韓國 信託業의 歷史¹⁾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투탁’, ‘종중재산의 관리’, ‘노비명의의 토지 소유 관리제도’ 등에서 신탁의 역사를 찾아 볼 수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신탁업은 역시 美國과 英國으로부터 이미 信託制度를 수입한 日本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신탁업이란 자기의 재산을 전문적인 지식과 대규모 조직을 가진 信託會社(受託者)에게 이전시켜 일정한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게 하여 자기가 소유하였을 때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신탁업이 어떻게 도입되고, 그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시대구분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黎明期(1910~1930년)

우리나라에 신탁업이 도입된 시기는 일본인이 한국에 진출한 1910년으로, 동년 3월에 ‘藤本合資會社’가 投資信託과 아울러 농업개척 및 부동산관리 경영업무를 개시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많은 信託會社가 설립되었는데 민간신탁회사의 전성기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호황기였던 1918년 이후라 할 수 있다.

1918년 3월 30일 법령 제28호로 朝鮮銀行法이 개정되어 동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신탁의 업무’라는 영업과목이 추가되면서 은행의 신탁

1) 배한경(1997)을 참조.

업이 태동되었으며, 그후 1918년 6월 7일 朝鮮殖産銀行令 제16호 제1항 제11호에도 '신탁의 업무'가 규정되어 신탁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1921년의 조선은행 영업보고서에는 신탁업무의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나, 신탁예금으로 3,049만 2,375환이라는 기록이 있어 상당액의 신탁이 수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擔保附社債信託은 1921년말 현재 조선은행이 3좌 670만환, 조선식산은행이 1좌 50만환의 실적이 있었다.

1930년 당시 상호에 '신탁'이란 명칭을 표시하였던 회사는 80여개사로 추정되며 대부분 부동산의 매매중개, 창고, 운수업 등 잡다한 업무와 겸영하여 실제 신탁을 주업무로 한 회사는 29개사였다. 1930년 6월말 현재 29개사 중 25개사의 종합수탁실적은 金錢信託 607만 9,885환, 不動産信託 6만 9,316환, 金錢債權信託 3,426환, 有價證券信託 11만 9,190환으로 受託財産의 대부분이 金錢信託이었으나, 50만환 이상의 수탁실적을 올린 회사는 군산신탁, 부산신탁, 조선식산신탁, 공제신탁 등 4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表 II - 1〉 各 信託會社 및 資本金(1930年 6月 30日 現在)

(單位 : 千환)

회 사 명	공칭자본금	회 사 명	공칭자본금
남선상사신탁합자회사	3	협화신탁주식회사	100
부산농업신탁합자회사	10	대동신탁주식회사	120
왕자신탁주식회사	20	조선권농신탁주식회사	250
평안신탁주식회사	40	조선식산신탁주식회사	250
진남포신탁주식회사	40	전남신탁주식회사	500
대팔신탁주식회사	40	대구신탁주식회사	500
포항신탁주식회사	50	부산신탁주식회사	500
목포신탁주식회사	50	평양신탁주식회사	500
주식회사대정신탁	100	경성곡물신탁주식회사	1,000
강경미곡신탁주식회사	100	공제신탁주식회사	1,000
목도신탁주식회사	100	군산신탁주식회사	1,000
진주신탁주식회사	100	조선토지신탁주식회사	1,307
원산신탁주식회사	100	조선신탁주식회사	2,000
함흥신탁주식회사	100	부산미곡증권신탁주식회사	3,000
북선신탁주식회사	100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1997. 10.

2. 解放前 依用信託法(1931~1945년)

영세한 信託會社의 난립과 취급신탁업무의 복잡한 표기 등으로 신탁업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시키고 감독할 수 있는 신탁관계 법령의 제정, 정비가 요구되어, 1931년 6월에 일본신탁업이 의용됨과 함께 ‘朝鮮信託業令’이 제정되어 동년 9월 동 시행규칙 및 부수법규가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지도 육성의 결과로 경쟁력 있는 군산신탁, 부산신탁, 남조선신탁, 공제신탁, 조선토지신탁 등 5개사만 존속하게 되었다. 이 信託會社들이 信託制度 확립 초기에 우리나라의 신탁업무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자본과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업적은 이루지 못하여 군산신탁에서만 不動產信託을 취급하였을 뿐 여타 회사는 金錢信託을 취급하는 데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인의 한국토지투자 권장을 목표로 하였던 부동산 신탁업무의 개척과는 거리가 멀어, 자본규모가 크고 不動產信託 등 여러 신탁업무의 개척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33년 1월 7일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朝鮮信託株式會社가 1천만원의 자본금으로 개업하고, 1933년 9월 30일 군산신탁, 11월 30일 부산신탁, 12월 27일 공제신탁, 1934년 9월 1일 조선토지신탁, 그리고 11월 30일 남조선신탁을 차례로 흡수하여 우리나라 유일의

〈表 II - 2〉 各種 信託의 受託推移

(單位: 천환)

연월말	금전신탁	금의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부동산신탁	합 계
1933. 11	9,039	18	9	6	3,060	12,132
1935. 11	38,934	16	192	46	17,110	56,298
1940. 11	83,889	692	23,260	215	42,387	150,443
1945. 3	162,339	529	19,325	194	71,855	254,242

資料: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1997. 10.

信託會社로서 신탁업을 독점하기에 이른다.

朝鮮信託株式會社は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반강제적인 저축의 유치에 따라 金錢信託이 증가하였고, 국채 및 군수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사채의 대량발행으로 인한 유가증권신탁이 발전되었다. 또한 군량미의 확보목적으로 농경지신탁 중심의 不動產信託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3. 信託業 暗黒期(1945~1960년)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전반이 혼란한 상황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신탁의 신규개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委託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일본인이 대량으로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朝鮮信託株式會社は 조선은행으로부터 약 8천만원의 비상차입금을 얻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不動產信託의 경우도 토지개혁을 우려한 결과 해약이 속출하였고 유가증권신탁 또한 기업의 기반붕괴, 조선주식거래소의 해산으로 그 기반을 상실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미군정당국은 美國의 신탁은행을 본떠 은행업무의 겸영을 허용하여 1946년 5월 1일 은행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동년 10월 29일 '朝鮮信託銀行'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신탁은행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여건의 성숙없는 최초의 신탁은행의 탄생은 곧이어 신탁업의 완전 후퇴화로 이어졌다.

이후 1955년 경제안정 시기에 민간에 대한 韓國信託株式會社の 설립신청은 자본문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유산되었고, 韓國興業銀行(조선신탁은행이 한국상공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설립)의 계속된 신탁업 부흥의 노력도 해방전 信託財産의 재평가와 이의 구분관리를 지시한 당국의 명령에 불응함으로써 말미암아 1959년 3월 18일 당국은 영업정지명령을 내렸으며, 1960년 7월 21일 그 후신인 韓一銀行에 대하여 신탁업무 면허취소 명령으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신탁업의 발전은 중단되게 되었다.

4. 信託關聯 法令의 制定(1961~1968년)

5·16군사정변 후 당국은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소요되는 內資調達 施策의 일환으로 장기금융업무인 신탁업의 재개 및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1961년 11월 3일 한일은행에 대하여 신탁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명령을 통하여 11월 13일부터 신탁업무를 재취급하게 하였다. 국민의 재산소유형태가 금전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신탁업무도 자연히 不特定金錢 信託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지만, 국내 자본시장의 미성숙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신탁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에는 저해요인이 상존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1961년 12월 10일 信託法을, 동년 12월 31일 信託業法을, 1962년 1월 20일 擔保附社債信託法을, 그리고 동년 8월 30일 信託業法 施行規則을 각각 공포하여 신탁에 관한 기본법령의 정비 및 확립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탁발전 여건을 조성하였다.

정부는 상기와 같은 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신탁업무 재개 이전의 信託 財産에 대한 정리 방침을 확립하고 1962년 9월 24일 “信託會社의 舊信託 財産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하여 재무부 내 재산처리위원회를, 한일은행 내에 동 사무국을 두어 처리업무를 개시하였다. 한일은행의 신탁업 재개로 金錢信託, 有價證券信託, 不動產信託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자 다른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서울)들은 시중은행업무의 균형발전과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내자동원의 공동추진을 목적으로 신탁업무면허 승인신청을 제출하고 1962년 9월 10일 信託業 兼營免許를 취득하여 10월 30일 금융통화운용위원회의 신탁업무경영인가를 받아 11월 1일부터 신탁업무를 개시하였다.

1965년 당국의 금리현실화조치와 계속적인 재무당국의 신탁업육성을 위한 지원조치에 따라 신탁업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탁업은 은행업의 부수경영적 위치에 있음으로써 질적·운용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受託財産이 不特定金錢信託으로 구성되었고 有價證券信託, 不動產信託 등 종합재산관리 기능도 미비하였다. 둘째, 受託財産의 태반이 은행계정으로 전용되어 증장기성 저축자금이 시중은행의 단기성 자금화됨으로써 신탁업무 자체가 은행업무와 同質化되었다. 셋째, 국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개발에 따라 증장기 산업자금의 필요성이 증대한바, 직접금융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화에 따른 국민들의 재산선호의 다양화에 부응할 신탁전담기관의 설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었다.

〈表 II-3〉 再開後 信託

(單位 : 백만원)

연월말	金錢信託	有價證券信託	不動產信託	합 계
1961. 12	121	3	—	124
1962. 3	612	1	13	626
1962. 6	1,062	80	20	1,162
1962. 9	1,601	70	20	1,691
1962. 11	1,647	70	39	1,756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表 II-4〉 5個 市銀 兼營 後 受託狀況

(單位 : 백만원)

연월말	金錢信託	有價證券信託	不動產信託	합 계
1962. 12	2,298	113	39	2,450
1963. 12	4,971	91	33	5,095
1964. 12	5,595	111	38	5,744
1965. 12	7,597	143	111	7,851
1966. 12	15,524	231	204	15,959
1967. 12	30,014	250	231	30,495
1968. 9	51,391	288	141	51,820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表 II -5〉 當局의 主要 施策

연 월	주 요 시 책
1962. 9. 2	협의기관으로 5개 시중은행 신탁부장회의 발족
1963. 1. 12	신탁자금운용요강 제정으로 대출, 투자비율, 운용제한 등 신탁자금운용 기준 마련
1963. 2. 1	1년 미만 신탁중지 등 신탁 최단 인수기간 변경으로 金錢信託의 중장기 성 저축성격의 확립
1963. 2. 15	신탁 최저수탁액 1천원으로 변경하여 영세소독자에게 대하여 문호 개방
1963. 4. 18	신탁경영은행에는 그 신용도를 감안하여 신탁에 있어서 신탁은행의 자본금의 5백분의 1에 상당하는 공탁만 하도록 공탁금액 인하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5. 信託業 獨占時代(1968~1982년)

1968년 12월 2일 신탁업무, 은행업무 및 관련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한국신탁은행'이 납입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동 은행의 설립에 따라 그동안 신탁업무를 취급하였던 5개 시중은행 및 부산은행에서는 1968년 11월 30일 신탁업 경영인가의 일부가 제한되었으며, 1970년 12월 1일에는 신탁업 인가가 취소되어서 한국신탁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신탁업을 취급하게 되었다. 한국신탁은행의 탄생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국내 유일한 신탁은행으로 신탁업을 전담하게 되었고 신탁을 은행업의 부수경영적 위치에서가 아닌 주업의 위치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한국신탁은행은 설립 후 의욕적으로 신탁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신종 신탁상품을 개발하여 단위운용신탁, 개발신탁, 부동산설비신탁, 동산설비신탁, 주택건설신탁, 지주신탁, 복지신탁, 교통상해신탁, 담보부사채신탁 등 다양한 신탁업무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1969년 2월 24일 청구목재주식회사에 대한 擔保附社債信託을 수탁하였고 1969년 5월 30일까지 8개 회사에 대한 擔保附社債信託을 계속적으로 수탁하여 총수탁액이

14억 5천만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1969년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 보완작업의 하나로 ‘證券投資信託業法’을 제정·공포하여 증권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였고 1970년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한국신탁은행을 수탁회사로 1억원의 기금을 설정하여 투자신탁업무도 개시하였다.

그러나 신탁업 주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971년 이후 계속적으로 침체를 보이다가, 1976년 8월 2일 서울은행이 유일한 신탁업회사였던 한국신탁은행을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서울신탁은행’으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유일하게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으로 존속하면서 신탁업무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表 II - 6〉 投資信託의 發展

연 월	주 요 내 용
1960년대 후반	경제개발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 대두
1966. 11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공포
1969. 8	증권투자신탁업법 제정 및 공포
1969. 12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으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도입
1972. 12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및 공포
1974. 9	투자신탁전문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의 설립
1975. 12	종합금융회사에 공사채형투자신탁업무의 취급허가
1977. 2	한국투자공사의 분해 해산(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 설립)
1981.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매출 개시
1982. 6	국민투자신탁의 설립
1989. 11~12	중앙, 동양, 한일, 제일, 한남 등 지방투자신탁사의 설립
1995. 8	증권산업개편에 따른 증권사의 투신업진출 허용
1995. 12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1996. 4. 1	투자신탁협회 설립
1996년 후반	증권투자신탁운용사 다수 설립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6. 信託業 兼營의 擴大(1983년~현재)

1968년 이후 계속되던 1개 은행에 의한 신탁업 영위체제는 금융산업의 자율화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다양화 요구와 제2금융권과의 차등적 저금리체계하에서 경쟁력 강화 및 은행의 수지개선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1983년 5월 지방은행, 1984년 2월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신한), 1984년 3월 한미은행, 1985년 3월 외환은행, 동년 9월 외국은행 국내지점(開發信託을 제외한 不特定金錢信託 업무에 한정), 1989년 1월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동년 3월 여타 국책은행과 신설 시중은행 등 신탁업 취급은행의 전면 확대가 이루어졌다.

신탁상품으로는 1985년 3월 25일 최초로 平均基準複合收益率 방식을 도입한 실적배당상품인 家計金錢信託이 도입되었으며, 1987년 1월 5일 老後生活年金信託, 1987년 9월 1일 企業金錢信託, 1988년 5월 10일 國民株信託(포항제철) 등 새로운 신탁상품이 소개되었다.

1988년 12월 5일 그동안 信託資金利率, 不特定金錢信託資金要綱, 不特定金錢信託資金信用貸出要綱, 積立式目的信託運用要綱, 年金信託運用要綱, 開發信託運用要綱, 信託資金의 銀貸 維持比率 및 利率 등 각각 존재하던 요강 등을 하나로 통합한 信託業務要綱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1989년 6월 23일에는 國民株信託(한국전력), 1989년 12월 1일에는 金錢信託 이외의 금전의 신탁상품이 시행되었으며, 1991년 3월에는 신탁업의 균형발전과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信託業法 제정 이후 최초로 동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가 설립되었으며 1991년 5월 10일 不動產信託業務運用要綱의 제정시행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1992년 12월 31일 근로자퇴직적립신탁, 1993년 4월 1일 적립식목적 신탁 실적배당상품의 취급, 1994년 6월 20일 개인연금신탁 취급, 1996년 1월 1일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수탁중지 등의 업무영역확대가 이루어졌다.

1996년 5월 1일 家計金錢信託, 企業金錢信託, 積立式目的信託, 特定

金錢信託, 金外信託 등의 상품의 신탁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고 중도 해지수수료도 대폭 인상되는 등 신탁의 큰 시련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1996년 10월 21일 가계장기신탁의 취급, 1997년 8월 1일 개인연금신탁업무운용요강이 폐지되어 신탁업무운용요강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신탁대출의 동일인(법인) 한도도 규정되었다.

〈表 II - 7〉 信託制度 主要 變更內容

	1995. 5. 20	1995. 8. 1	1996. 5. 1
주요 변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폐지 - 합동운용상품내 별도펀드구성 금지 - 金外信託에 대한 신탁기간 등 설정 - 편법, 부당한 영업행위 감독강화 - 信託財産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지정하도록 特定金錢信託 및 金外信託 제도 보완 - 은행신탁 표준약관 등 제정 - 통화채인수 의무비율, 제조업대출 지도비율 완화 - 순증발행한도축소 등 개발신탁 제도 운용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상품의 만기구조 장기화(1년→1년 6개월) - 신탁보수적용관련 제도정비 - 중도해지수수료 상향조정 - 확정배당상품의 단계적 축소(開發信託 발행한도 동결) - 원본보전 적용대상 상품의 축소 - 신탁상품 수익률 홍보방식 개선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表 II - 8〉 不動產 信託會社

	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주은부동산신탁
설립일	1991. 3	1991. 4	1996. 3	1996. 7
납입자본금	50억원	55억원	300억원	100억원
전액출자	성업공사	한국감정원	토지공사	주택은행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탁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1961년 信託業法이 제정된 이후 수차에 걸쳐 신탁업계의 변천을 거쳐 1983년부터 신탁업의 취급은행이 확대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3년말에 약 1조 7천억원에 불과하던 信託 受託額이 13년만인 1996년말에 그 100배가 넘는 178조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약 1.6배의 증가를 기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동안 金錢信託의 저축성예금 대비 비율도 11.0%에서 128.9%로 역전되었으며, 제2금융권 저축 중 金錢信託의 점유비중도 8.8%에서 33.8%로 크게 증가하는 등 신탁업은 그 양적인 팽창에 못지않게 우리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커져서 이제는 신탁의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동향을 상당히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업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신탁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장기사업조달을 위한 신탁상품의 수탁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탁상품이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신탁업이 다른 금융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금리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의 양적 팽창에 따라 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었다. 그 부정적인 면을 보면 첫째, 신탁상품이 시중의 단기성 상품과 유사하게 변질됨으로써 일반은행의 단기성 상품과 신탁상품이 동질화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신탁업을 육성·발전시켜 온 것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그 주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나, 受託高의 증대를 위한 각 은행의 노력과 경쟁은 신탁이 단기성 자금까지도 과도하게 유치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신탁상품과 은행계정의 저축상품과의 차별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신탁이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실적배당원칙의 약화에 따른 문제다. 원래 신탁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受託者가 委託財産을 관

리·운용하여 발생한 결과를 그대로 委託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受託者가 委託者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신탁업을 육성하고자 현실적으로는 元本補塡이나 利益의 補足을 보장한 상품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元本補塡이나 確定配當商品이 신탁의 수탁과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신탁의 외형이 예금을 초과할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한 지금은 신탁상품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實績配當原則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실적배당원칙이 회복되지 않으면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신탁업계의 부실을 초래하여 신탁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신탁업무는 각 취급은행에 따라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財産信託(有價證券信託, 金錢債權信託, 不動產管理信託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지금까지 신탁업의 발전역사에서 살펴 보았듯이 金錢信託을 위주로 성장하여 왔다. 신탁업의 입장에서도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복잡하고 위험한 재산신탁보다는 쉽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확보되는 金錢信託을 선호하여 당분간은 金錢信託을 위주로 신탁업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은행신탁이 은행업과 차별적인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고객의 재산관리, 증식이라는 신탁의 고유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金錢信託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재산신탁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신탁업의 미래는 재산신탁과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개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당국에서는 1996년 5월 1일 金錢信託을 이용한 은행간 과도한 수신경쟁에 따라 신탁의 본질과 괴리되는 단기성 자금의 유치나, 우회적 방법을 통한 배당률의 편법인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배당원칙의 확립과 신탁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금융산업에서 신탁업의 성격과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한다는 원칙하에 제도개편을 단행하였다.

〈表 II - 9〉 1984年 以後 信託制度 關聯 主要事項

실시일	주요 변경 내용	비고
1984. 1. 19 감심911-23	-신탁업무경영 내인가 금통위에서 신탁업무경영 내인가 (신탁업무경영위에 관하여 별도로 신탁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것)	-1976부터 서울 신탁은행 전담취급 -1983.5 지방 은행 신탁업 무경영
1984. 1. 31 이이1223.2-143	-신탁업 경영인가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함	
1984. 1. 31 이이1223.2-143	-신규신탁업 경영기관에 대한 신탁요율 및 운용요강 등의 시달 * 신탁자금요율 * 불특정금전신탁자금운용요강 * 불특정금전신탁자금신용대출요강 * 적립식목적신탁운용요강 * 연금신탁운용요강 * 개발신탁운용요강 * 신탁자금의 銀貸 유지비율 및 그 이율 (불특합동 銀貸 유지비율 : 3.5~10% 미만)	
1985. 3. 16 은행22220-283	-가계금전신탁 운용요강 및 신탁요율 등의 조정시달 * 가계금전신탁운용요강 * 신탁자금요율, 은행계정대 유지비율 및 이율 (가계금전 銀貸 유지비율 : 10% 이상)	
1986. 12. 19 은행22220-1324	-노후생활연금신탁 운용요강 및 신탁요율 등의 제정 시달 * 노후생활연금신탁 운용요강 * 노후생활연금신탁 배당률 * 노후생활연금신탁 신탁보수 * 은행계정대 유지비율 : 3.5~10% 미만 * 수탁자산에 대한 운용제한 (1987. 1. 5 이후 각 행별 자율시행)	
1987. 8. 26 은행22220-883	-기업금전신탁 운용요강 시달(1987. 8. 27 시행) -기업금전신탁 운용요강 시행지침 시달 (1987.8.27 공문, 8.27 시행)	
1988. 2. 29 은행22220-236	-국민주신탁 취급인가 * 국민주신탁 운용요강 * 국민주신탁 운용요강 시행지침	

〈表 II -9〉의 계속

실시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1988. 12. 1 은행22220-1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제정 송부(1988.12.6 시행)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 적립식목적신탁 * 개발신탁 * 가계금전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 기업금전신탁 * 국민주신탁 (불특정금전신탁 銀貸 유지비율 : 2.0~10% 이내) 	-1988. 2. 5 금리자유화 (2년 이상)
1989. 11. 28 은행22220-12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89. 12. 1 시행) *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 신설 * 금전신탁 이외의 재산의 신탁 신설 * 불특대출의무비율 신설(기업, 국민주를 제외한 불특운용자산 합계액의 60% 이상) * 기업, 국민주 주식운용한도(전월평균 운용자산의 25%) 폐지 * 개발, 기업, 국민주 銀貸유지의무(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에서 10%) 폐지 * 기업금전신탁운용대상 자산확대(양곡기금증권, 무역어음) * 보증어음 매입한도 신설(수탁금액의 5%) * 특정금전신탁의 銀貸이율 제한(은행계정 P 이상) 폐지 	-1989. 6. 23 한전 국민주
1990. 5. 21 은행22220-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0. 6. 1 시행) * 부동산담보금지대상 신설 	
1990. 6. 30 은행22220-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0. 7. 2 시행) * 통화조절용채권(통안, 재정증권, 외평채) 정의 * 특정, 금외 합동운용금지 및 최저수탁액(10억) 신설 * 특정중도해지, 만기후배당률 변경 * 일반불특 통화채인수의무 신설 (전월평균운용자산의 30% 이상) * 불특 대출의무비율 통화채인수보유금액 포함 *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의무(15조의 2) 신설 	
1990. 9. 28 은행 22220-8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일부 개정(1990. 9. 28 시행) * 보증어음매입한도 상향(총수탁금액의 5%→10%) 	

〈表 II -9〉의 계속

실시일	주요 변경 내용	비고
1991. 5. 1 은행22220-385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 통보(1991. 5. 2 시행) * 통화조절용채권에 산금채, 증금채 포함 * 주식매입(또는 소유)한도신설(발행주식의 10%) * 동일종목 유가증권매입(또는 소유) 한도신설(개별 수탁금액의 10%) * 가계대출 동일인 한도 신설(5천만원) * 부동산담보취득 대상 추가	
1992. 1. 14 은행22220-6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통보(1995. 1. 15 시행) * 보증어음매입한도에서 무역어음 제외 * 주식 이외의 5억원 이하 유가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수탁금액의 10%) 폐지 * 단기금융회사, 종금사가 인수한 무역어음 매입 허용 * 기업금전신탁 통화채인수의무비율 인하(80%→70%) 및 무역어음매입의무(운용자산의 10%) 신설 * 저액 RP매입 허용 * 신탁계약서, 약관 보고대상에서 승인대상으로 변경 *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부동산취득 일부완화	-신탁업무
1992. 7. 22 은행22220-172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 통보(1992. 7. 22 시행) * 담보취득 제한업종 범위 축소 * 담보취득 예외허용 대상 부동산의 범위 조정	
1992. 11. 30 은행22220-287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2. 12. 1 시행) * 증권사 발행어음 매입허용 * 보증사채를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수탁금액의 10%) 대상에서 제외 * 가계자금대출한도 축소(동일인 5천만원→3천만원) 및 수익권 담보대출 금액제한 폐지 * 대출의무비율 폐지 * 불특정금전신탁 은행계정대 유지의무면제(완전폐지) *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취급허용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변경	-1992. 12. 31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취급
1993. 1. 25 은행45232-22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3. 1. 26 시행)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기간 및 만기보족이익률 변경 * 불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변경	-만기2년이상 개발 일반불 특금리자유화 -적립식목적신 탁실적배당전 환(1993. 4. 1 실시)

〈表 II-9〉의 계속

실시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1993. 2. 6 은행 4523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3. 2. 8 시행) *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 * 노연 중도해지수수료 세분화 실시 	
1993. 3. 25 은행 4523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3. 3. 26 시행) * 특정, 금외신탁 최저수탁금액 인하(10억원→5억원) * 보증어음 매입한도 확대(특정+금외수탁금액의 10%→20%) * 단독운용신탁상품의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10%) 폐지 * 가계자금대출한도 폐지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세칙에서 담보허용 * 증개어음 매입 허용 * 투신사, 신탁회사 발행 수익증권 매입허용 * 신탁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대출 허용 	
1993. 6. 25 은행 45232-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3. 7. 1 시행) * 자행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현금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 추가 	
1993. 9. 1 은행 45232-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3. 9. 3 시행) * 가계금전신탁 2, 3년제 신설(1993. 10. 1 시행) * 기업금전신탁기간변경(180일→180일에서 270일까지) * 기업금전신탁보수율변경(0.5% 이내→0.5%로 고정)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폭 확대(0.75%→0.75% 이내) *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60~90일 1% 인하 	
1993. 12. 30 은행 45232-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4. 4. 1 시행) * 특정금전신탁 통화채인수의무 폐지 	
1994. 2. 4 은행 4523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4. 2. 5 시행)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상 *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배당률 인하 * 기업금전신탁 신탁보수 인상(0.5%→0.6%) * 가계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변경(0.75% 이내→0.75%에서 1% 이내) * 기업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 * 적립식목적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인상(0.5% 이내→1.5%에서 1.75% 이내) 	

<表 II -9>의 계속

실시일	주요 변경 내용	비고
1994. 5. 2 은행 45232-158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4. 5. 2 시행) * 특정, 금의 최저수탁금액 5억원 폐지 * 합동운용수탁 동일종목 유가증권 매입한도(수탁금액의 10%) 폐지 * 기업금전신탁 무역어음 매입의무(운영자산의 10%) 폐지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발행규모 (개발신탁수익증권 총발행규모의 5% 이내) 폐지	
1994. 6. 13 특금 45232-15	-개인연금신탁업무 운용요강 제정(1994. 6. 20 시행)	-1994. 6. 20 취급개시
1994. 9. 9 특금 45232-58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4. 9. 10 시행) * 자행신용카드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허용 * 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인수보증한 어음, 증권회사가 발행한 어음 및 증권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B급 이상인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매입 포함 *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수수료 신설, 만기후배당률 폐지, 일반불특 1년 6개월 이상, 기업금전신탁 신탁기간 변경, 신탁보수 및 중도해지수수료 신설(1994. 10. 1 신설)	
1994. 11. 29 은행 45232-79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4. 12. 1 시행) * 일반불특금리(1년 6개월) 자율결정 * 채권상각준비금 적립기준 변경(대출잔액의 3/1,000 이내→7/1,000 이내) * 제18조 제5항 제1호 개정(종합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인수보증한 어음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매입)	
1994. 12. 19 은행 45232-81	-신탁업무관련 제도개선사항 통보 * 법인이 위탁자가 되고 수익자가 당해 법인의 대주주 등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수익권담보대출 금지 * 신탁재산을 통한 자행주식 취득금지(위탁자의 운용지시에 근거한 취득은 가능) * 특정 및 금의신탁에 가입한 위탁자의 자사주식 또는 위탁자의 계열사주식 취득 금지 * 주식운용업무와 관련된 신탁관련 임직원의 주식투자 행위 금지	

〈表 II -9〉의 계속

실시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1995. 5. 16 금융45232-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5. 5. 20 시행) * 금외신탁 신탁기간 1년이상, 중도해지수수료 신설 * 특정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여타 신탁상품의 운영자산을 편입, 편출하는 행위의 금지 * 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회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함) *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채권의 매입 포함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수탁폐지(1996. 1. 1 이후) 	
1995. 7. 20 금융45232-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5. 8. 1 시행) * 특정, 금외신탁 운용방법 지정, 계약서에 명기 *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방법을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의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변경 * 금외신탁 통화채 인수비율(30%→20%) 인하 * 기업금전신탁 통화채 인수비율 운용자 자산의 70%→수탁금액의 50%로 인하 -제조업대출비율 변경 * 제조업에 대한 신탁대출잔액/총신탁대출잔액 40%→30%로 인하 	
1995. 9. 20 금융45232-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예외적용 인정 (신탁업무운용요강 제8조의 2 제4항) * 1995. 9. 13 이전 특정금전신탁(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가입자가 1995. 9. 14부터 1995. 12. 31 이내 중도해지시 은행장 재량으로 중도해지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 	
1996. 2. 14 금융45232-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자금의 제조업대출지도비율 폐지 (시행일 : 1996. 3. 1) 	
1996. 4. 16 금융45232-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6. 5. 1 시행) 1. 불특정금전신탁 신탁보수 동일상품의 신탁보수는 신탁기간에 관계없이 해지시까지 일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신탁기간의 장기화 및 중도해지수수료 단일화 대상과목 : 가계, 기업, 적목, 특정, 금외 신탁기간 : 1년 6개월 이상 	<p>(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을 통한 신탁회사가 자사주식 취득의 금지(단, 특정금전신탁 및

〈表 II-9〉의 계속

실시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1996. 4. 16 금융 45232-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미만 : 해지액×30/1,000 · 6개월이상~1년미만 : 해지액×25/1,000 · 1년~1년 6개월 미만 : 해지액×20/1,000 <p>다만, 중도해지수수료적용으로 인하여 해지지급액이 信託元本에 미달하는 경우는 배당률이 1%이하가 되는 범위내에서 중도해지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특정, 금외신탁은 해당되지 않음).</p> <p>3.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유지의무 및 신탁자산의 편출입 금지사항반영(재경원 제도개선사항 : 특금45232-81, 1994. 12. 19 및 금융45232-353, 1995. 12. 12)</p> <p>4.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신탁회사가 이를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p> <p>5. 신탁재산의 운용범위 확대 증권거래법 제2조의 2에 의한 주가지수선물거래, 동법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된 주식이나 사채(* 장외시장 등록주식 추가) *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추가 - 개인연금 신탁운용요강(1996. 5. 1 시행) 배당률의 공시의무(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에 公示)와 수탁 및 자산운용현황 업무보고의무(월보) 폐지</p>	<p>금외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한 취득은 가능)</p> <p>-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에 가입한 위탁자의 자사주식 또는 위탁자의 계열사 주식취득의 금지</p> <p>- 신탁회사의 주식운용업무 관련 임직원의 주식 투자행위의 금지(신탁자산의 편출 및 편입)</p> <p>- 신탁운용자산의 처분은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신탁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운용자산을 편출·편입할 수 없다.</p> <p>-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운용자산을 편출·편입할 수 있다.</p> <p>* 해지금액 규모 범위 내에서의 거래</p> <p>* 주식을 제외한 운용자산의 거래</p> <p>* 거래가격은 매입수익률(장부가격)을 적용</p> <p>* 유가증권 중에서는 당초 매입 수익률이 편출·편입시의 시장금리와 근사한 유가증권부터 우선적으로 거래(인가사항의 간소화)</p> <p>- 금전신탁 수익권 또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단, 위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위탁자의 계열사가 아닌 법인에 대한 대출에 한한다).</p>

〈表 II-9〉의 계속

실시일	주요변경내용	비고
1996. 10. 18 금융45232-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6. 10. 21 시행) 1. 가계장기신탁의 신탁기간 및 만기보족이익률 신탁기간 : 3~5년, 보족이익률 : 실적배당 2. 가계장기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 실적배당 - 중도해지수수료 3. 가계장기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율 : 2년미만 20/1,000 2년~3년미만 : 10/1,000 4. 가계장기신탁의 만기후 배당률 : 실적배당 	* 가계장기신탁 시행에 따른 업무요강 개정 (조감법 제83조의 3 신설)
1996.12.24 금융45232-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6. 12. 26 시행) 1. 통화조절용 채권의 범위확대 * 국채관리기금이 발행하는 국채관리기금채권을 통화조절용채권의 범위에 추가 2. 특정금전신탁 및 금의신탁의 신탁자금 운용방법 지정확대 * 자금운용방법의 지정이 하나에서 두개 이내로 확대 3. 특별보수 취득사유 추가 * 결산상 특별한 사유(미수이자납입, 상각채권추심이익, 각종적립금의 환입, 수익률산정후 이자율의 변경) 발생시 특별보수 취득가능 4.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명시 * 주식의 인수 또는 매입에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포함 5. 불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상의 제한 *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주식운용비율(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이내) 폐지 * 기업금전신탁은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 범위내의 주식인수 또는 매입규제 조항에 편입시킴 6. 인가사항의 간소화 *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주식운용비율(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이내) 폐지 * 기업금전신탁은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25% 범위내의 주식인수 또는 매입규제 조항에 편입시킴 * 업무방법서와 매영업년도 업무보고서를 인가 및 보고생략대상에 추가 * 표준계약서 및 개별상품의 약관의 서식을 상품 취급전에 재경원에 보고(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 금전신탁거래 표준약관 및 개별상품의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 요청시 교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表 II -9〉의 계속

실시일	주요 변경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무 및 신용상태가 우량한 업체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인수, 매입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인가생략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중 기타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대상에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매입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 추가 	
<p>1997. 5. 6 금융41232-141</p>	<p>-신탁업무 운용요강 개정(1997. 5. 6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화채 인수 의무비용 폐지 * 일반불특정금전신탁(종전 : 전월 평균수탁금액의 30%) * 기업금전신탁(종전 : 수탁금액의 50%) * 금외신탁(종전 : 수탁금액의 20%) 2. 신탁재산(금전신탁 및 금외신탁) 운용방법의 변경 * 수탁금액의 20%를 초과한 보증어음 및 콜거래참가기관이 발행한 어음의 매입행위금지(무역어음 제외)→운용대상기관확대 3.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에 다음 사항 추가 * 콜거래 참가기관이 발행한 어음 * 증권회사, 콜거래중개회사가 매출·중개한 어음의 매입→운용대상기관 확대 	
<p>1997. 7. 31 금융41232-227</p>	<p>-신탁업무 운용요강 전문 개정(1997. 8. 1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연금신탁업무 운용요강 폐지 신탁업무 운용요강으로 일원화 2. 불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적용으로 중도해지 배당률이 1%에 미달할 경우 1% 범위내에서 중도해지수수료 감액가능 3. 신탁재산 운용대상에 추가지수음션거래, 건설공제 조합발행 보증서담보대출 추가 4. 특정금전신탁 대출 운용잔액 은행계정대 및 콜론으로 운용가능 5. 전년말 총신탁대출 잔액의 5%를 초과하여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대출하는 행위 금지 6. 신탁상품 홍보시 유의사항 신설 7. 이자, 조세공과금지급, 결산에 따른 신탁보수지급 등 편출입 사유 확대 8. 기존 금외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포함 9. 개발신탁 신탁보수를 총수익×20/100 이내로 단일화 	

資料 : 은행신탁연구회, 『은행신탁』, 창간호.

Ⅲ. 主要國의 信託制度 및 稅制

영미법상의 신탁은 一般信託과 投資信託의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신탁의 전통적인 형태인 개인재산관리 목적상의 신탁 즉, 유산관리나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신탁은 일반신탁이라 불리운다. 또한 일반신탁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재산관리 목적하에 이루어지므로 주로 단독운용의 성격을 지니며, 유산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實物信託이 주종을 이루고 법적규제나 실무상으로 金錢信託과 實物信託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美國이나 英國에서의 일반신탁은 受託者가 개인인 친척이나 변호사, 회계사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장기간 재산관리를 요구할 경우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또는 금전 위주의 신탁자산일 경우 은행의 信託部(Trust Department)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영미법의 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實物信託(재산상속 또는 관리), 單獨運用 그리고 財產管理目的의 他益信託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신탁업무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金錢信託, 合同運用, 財產增殖性格의 신탁과는 상이하다. 이 같은 차이점은 美國이나 英國銀行의 信託部에서 취급하는 신탁업무의 경우도 동일하다. 즉, 은행에서의 金錢信託도 單獨運用, 他益信託이 주종을 이루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合同運用, 自益信託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와서 크게 발달한 다수 투자가를 상대로 한 투자목적의 신탁은 投資信託으로 분류된다. 投資信託의 경우 委託者와 受託者는 구별되어 있으나 委託者와 受益者는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신탁과 달리 合同運用과 金錢信託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미법상 일반신탁에서의 信託所得은 受託者를 거쳐 受益者에게 전달되며 委託者는 신탁설정시 증여세나 유산세 혹은 양도세를 내게 된다.

受託者와 受益者의 차원에서는 信託導管理論에 근거하여 이중과세가 없으며, 信託所得의 내용도 受益者 課稅時까지 유지되는 것이 영미 일반신탁의 큰 특징이다. 반면 신탁에 누적되는 소득은 신탁의 실체를 인정하여 受託者에게 과세되며, 누적된 소득의 분배시에 受益者는 受託者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는다.

日本의 投資信託은 1937년 대화증권의 전신인 후지모토빌딩 브로커가 창립한 후지모토 유가증권투자조합이 시조이다. 이것은 英國의 Unit Trust의 형태를 취하여 1좌에 500엔, 200좌 단위로 1개 조합을 결성하고 유가증권투자를 통하여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며 1940년까지 거액의 자금을 모집한 후 중지되었다. 그 후 1941년 野村證券이 信託業法에 따른 신탁계약에 기초한 投資信託을 최초로 모집하였는데 당시의 구조는 증권회사가 委託者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권을 판매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다소 근접하였다. 戰後 1948년에 美國의 제도를 참고로 한 증권거래법이 공포·시행되어 증권시장의 재건이 진행되었으며, 1951년 6월에 證券投資信託業法이 특별법으로서 공포·시행됨으로써 오늘날의 일본투자신탁의 법적 기초가 이루어졌다.

日本의 投資信託은 법인성격을 갖는 회사형이 아니라 계약형이다. 日本의 경우 委託者는 委託者 業務를 수행하는 委託會社이고, 受託者는 信託會社 또는 信託業務를 영위하는 信託銀行이며, 이 양자는 대장성대신의 승인을 취득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설정된 신탁으로부터 나온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이 수익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受益者이며 그 권리는 수익증권에 의해 행사된다. 신탁의 설정방식은 전부 現金充當型인데,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을 모집·판매함으로써 형성된 투자자의 현금은 위탁회사로부터 信託會社에 신탁되어 그 재산은 법인자격이 없는 독립된 信託財産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행증권에 의해 형성된 투자자의 자금이 법인성격을 가지는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會社型投資信託과는 다르다.

현행 日本의 投資信託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開放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위형 投資信託의 펀드에 있어서는 당초 설정 후 일정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환매청구를 금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投資信託의 형태를 운용방식에 따라 固定型和 融通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日本의 投資信託의 경우 대부분의 펀드는 신탁약관에 정해진 투자 유가증권의 범위 내에서 운용자가 자유로이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융통형이다.

1. 日本의 投資信託

가. 日本의 信託課稅

1) 課稅의 原則

가) 課稅時期

信託所得은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受益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委託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合同運用信託 등에 있어서는 분배시 과세된다.

나) 所得의 歸屬

信託所得은 受益者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受益者에 귀속되나, 受益者가 불특정인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委託者에게 귀속된다. 受益者가 개인인 경우에는 受益者가 信託財産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의 종류가 결정된다¹⁾. 受益者가 법인인 경우에는 信託財産에 관계한

1)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료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소득, 대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잡소득, 공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 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은 잡소득으로 분류된다.

益金額에서 損金額을 공제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受益者가 비과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도 비과세된다.

2) 例外가 되는 信託

가) 例外가 되는 信託의 種類

신탁세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은 다음과 같다.

- (1) 合同運用信託
- (2) 證券投資信託
- (3)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된 신탁으로 適格退職年金信託, 厚生年金基金信託, 勤勞者財産形成給付金信託, 勤勞者財産形成基金信託
- (4) 國民年金基金信託

나) 例外가 되는 信託에 대한 課稅

信託財産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受託者의 수입 및 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受益者에 대하여 분배시 과세한다.

3) 信託財産에 관한 所得稅 源泉徵收의 特例

가) 源泉徵收 不適用의 特例

信託財産에 속하는 공사채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신탁의 종류, 受益者의 속성 등에 따라 원천징수 부적용의 특례가 있다.

나) 源泉所得稅 相計의 特例

信託會社가 인수한 合同運用信託, 證券投資信託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의 금액은 수익분배에 관한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4) 信託에 관한 相續稅 · 贈與稅

개인이 委託者이고, 다른 개인이 受益者인 다음과 같은 신탁의 경우에는 受益者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1) 他益信託을 설정한 경우
- (2) 특정한 사유²⁾에 의해 委託者 이외의 자가 受益者가 되는 경우
- (3) 위의 특정한 사유 중 2, 3번째의 경우가 발생되기 전에 신탁이 終了 되었을 때 委託者 이외의 자가 귀속권리자로 된 경우이다.

과세시점은 (1)의 경우에는 신탁설정시에 과세되고, (2)의 경우에는 각 사유발생시, (3)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시에 과세된다.

나. 信託의 種類



1) 金錢信託

金錢信託은 크게 合同運用指定金錢信託, 貸付信託, 單獨運用指定金錢信託·特定金錢信託, 年金信託, 財産形成信託, 財形給付金信託, 기타의 金錢信託으로 구분된다.

가) 合同運用指定金錢信託

合同運用指定金錢信託의 경우 信託財産의 수입 및 지출이 受益者에 대하여 발생시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受託者의 수익 및 지출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受益者에 대한 분배시 과세된다. 信託財産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관해서는 受託者에 대해 원천징수가 행해지며, 信託財産에 속하는 공사채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부적용의 특례가 있다.

개인이 受益者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며, 법인이 受益者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나) 貸付信託

貸付信託에 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合同運用指定金錢信託과 같다. 신탁설정전 貸付信託의 모집기간중의 기간에 대응하여 지불하는 분배수익(전불수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취급된다. 매입시 당초신탁 원본액을 뺀 잔액(소득)에 관해서는 수익분배형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하며, 수익만기수취형일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된다. 貸付信託受託證券의 양도시 고객간의 양도에서는 수익증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2) 自益信託의 受益者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신탁에 있어 의사표시가 있고 受益者가 확정된 경우, 受益者가 불특정한 경우나 또는 미존재 신탁에 있어서 특정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 정지조건부의 신탁에 있어 조건이 성취된 경우.

유가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수탁자와 고객간의 양도인 경우는 유가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공공법인 등이 지불받는 貸付信託의 분배수익에 대해서는 공공법인 등이 그 수익증권을 계속해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분배수익만이 비과세된다.

다) 單獨運用指定金錢信託(特定金錢信託)

單獨運用指定金錢信託은 受益者が 지정된 單獨運用信託이며 受益者課稅의 원칙에 따라 受益者が 信託財産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관계가 성립된다. 受益者が 개인인 경우는 信託財産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의 종류가 결정되고 소득의 금액이 계산된다. 受益者が 법인인 경우 信託財産에 대한 익금액에서 손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법인세가 부과된다. 受益者が 비과세법인(비수익사업)인 경우는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라) 年金信託(適格退職年金信託・厚生年金基金信託)

부금에 대한 과세는 사업주가 각출한 부문과 종업원이 각출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법인사업주의 경우 適格退職年金信託・厚生年金基金信託의 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업원부금의 경우 適格退職年金信託은 생명보험료 공제를 받으며 厚生年金基金信託은 사회보험료 공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적립금은 사업주가 각출한 부금에 특별법인세³⁾가 과세되며 특별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適格退職年金信託, 厚生年金基金信託의 信託財産에 귀속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자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

3) 각출시점에서는 종업원의 소득으로 하지 않고 급부시까지 이연하는 대신 과세이연에 따른 지연 이자세를 信託財産에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특별법인세가 부과된다.

은행의 수익으로부터도 제외되며, 공사채·주식 등의 이자배당 등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급여금에 대한 과세는 퇴직연금일 경우 適格退職年金信託은 종업원부담금 상당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잡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며, 후생연금신탁은 급여금 전액에 대해서 잡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퇴직일시금일 경우 適格退職年金信託은 종업원부담금 상당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厚生年金基金信託은 급여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일 경우 適格退職年金信託은 재직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급여금 전액에 대해 퇴직수당금으로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퇴직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급여금 전액에 대해 계약에 의하지 않는 정기금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厚生年金基金信託일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마) 財産形成信託(財形信託·財形貯蓄信託·財形年金信託)

재형저축으로 계약된 財形信託, 財形貯蓄信託, 財形年金信託은 합동신탁으로 운용되며 그 분배수익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된다. 財形貯蓄信託 및 財形年金信託은 일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원본합계액의 일정 한도액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財形信託은 비과세의 적용 없이 그 이자는 원천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財形給付金信託·財形基金信託

財形給付金信託 및 財形基金信託은 신탁금의 각출시 사업주가 각출하는 신탁금은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는 손금으로, 개인일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며,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각출한 신탁금에 대해서는 각출시 종업원의 급여소득으로는 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는 장래의 급여금 수취시까지 이연된다. 財形給付金信託 및 財形基金信託의 信託財産

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受益者, 委託者 및 受託者 어느 것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신탁금 및 운용수익은 급부금의 수취시에 과세된다. 또 財形給付金信託 및 財形基金信託의 信託財産에 속하는 공사채, 주식 등의 이자 및 배당 등의 원천징수는 면제된다. 급부시는 급부금의 종류와 발생사유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만기급부금은 법정만기일에 일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중도지불급부금은 발생사유에 따라 일시소득, 급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비과세한다. 급부금계약 또는 기금계약의 해약에 따른 급부는 일시소득으로 간주된다.

사) 其他의 金錢信託

- ① 사내예금충당신탁 : 예금자가 사내예금충당신탁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예금원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내예금충당신탁 수익의 受益者는 委託者이므로 수익지불시에는 통상 金錢信託과 같으며 委託者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② 퇴직금충당신탁 : 사업주가 각출하는 신탁금은 각출시에는 손금산입되지 않지만 파산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으로 지불되었을 경우 그 지불액이 손금산입된다. 또 종업원에 대한 그 지불액은 퇴직소득으로서 과세된다.
- ③ 채석재해방지준비금신탁 : 사업주가 각출하는 신탁금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손금에, 개인인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④ 폐관준비금신탁 : 사업주가 각출하는 신탁금은 손금산입한다.

2) 金錢信託 以外の 金錢의 信託(金外信託)

가) Fund Trust

單獨運用的 金전의 신탁으로서 세무상 취급은 特定金錢信託에 준하여 행해진다. 단, 신탁의 終了에 따른 受託者로부터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으로의 유가증권의 양도에는 유가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從業員持株信託

신탁기간중에는 사업주가 각출하는 장려금 및 특별장려금은 급여소득으로서 종업원 개인에게 과세되며, 신탁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은 종업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서 취급된다. 또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기명의의 다른 주식 등의 배당금과 합산하여 배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탁종료시에 주식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한다. 신탁종료에 따른 受託者로부터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으로의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에는 유가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證券投資信託

證券投資信託은 증권투자신탁법에서 규정하는 證券投資信託 및 이들과 유사한 외국신탁을 말하는데, 증권투자신탁법에서 규정한 證券投資信託은 信託財産을 委託者의 지시를 토대로 특정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해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證券投資信託의 種類

- ① 오픈형 證券投資信託 : 당초 설정된 信託財産에 설정 후에도 신규자금을 추가할 수 있는 것.
- ② 유니트형 證券投資信託 : 당초 설정한 것으로부터 상환까지 사이에 추가설정을 행하지 않는 것.
- ③ 公社債投資信託 : 證券投資信託 중에서 그 信託財産을 公社채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식 또는 출자에 대해 운용하지 않는 것.
- ④ 株式投資信託 : 公社채투자신탁 이외의 證券投資信託.

나) 信託財産의 運用時 課稅

證券投資信託의 信託財産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법인세의 계산상 受託者의 수입 및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受益者에 대한 분배시 과세가 된다. 또 證券投資信託의 信託財産에 속하는 공사채, 주식 등의 이자 및 배당 등의 원천징수는 면제된다.

다) 收益分配時의 課稅

주식투자신탁은 개인이 受益者인 경우 수익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 원천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으며, 법인이 受益者인 경우 일률적으로 15%가 소득세 원천징수된다. 公社債投資信託은 개인이 受益者인 경우 수익분배금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 원천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다. 또 법인이 受益者일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4) 有價證券信託

가) 受益者가 個人일 경우

주식배당금, 주식투자신탁수익의 분배 등은 배당소득으로, 공사채, 예·저금이자, 공사채투자신탁 수익의 분배 등은 이자소득으로, 유가증권의 대부료는 잡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유가증권매각이익은 양도소득, 사업소득, 잡소득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비과세된다. 주식 등에 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를 종합과세 혹은 35%를 원천분리과세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나) 受益者가 法人일 경우

국내법인이 지불받은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80%가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액은 소유기간에 따라 당

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된다.

5) 金錢債權信託

금전채권신탁은 크게 생명보험신탁과 주택금융 채권신탁으로 구분된다.

가) 生命保險信託

생명보험신탁은 보험금을 취득한 단계에서 상속·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며 수취인을 자기 또는 배우자, 기타 친족으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또는 부금에 대해서는 일정의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이 있다. 委託者(被相續人)의 사망에 의해 相續人이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被相續人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한 것으로 간주되나 일정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또 委託者의 보험사고에 의해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험금 수취인 이외의 자가 부담한 것일 때는 그 부담세율에 따른 보험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住宅金融 債券信託

住宅金融 債券信託은 受益者가 信託財産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관계가 처리된다. 受益者인 법인이 수취하는 수익배당금은 익금에 계상된다. 受益者가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익이 발생했을 때는 익금에, 양도손이 발생한 때에는 손금에 각각 계상된다.

6) 動産의 信託

가) 信託契約時

委託者는 물건 인도시 판매가액에 의해 매상계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령한 때에 익금처리하며, 임차인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 구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委託者와의 계약에 기초한 판매가격을 구입가격으로 한다.

나) 信託期間中

임차인은 임차기간중의 각 연도에 있어서 지불하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분은 당해 물건의 구입대금의 일부지불로 간주하여, 그 합계액을 동액의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취급한다. 고정자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신탁된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양도를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임차인의 사업용에 사용되고 있는 때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보고 과세한다.

다) 收益授受時

개인이 수익(금리 상당액)을 받는 경우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소득, 기타동산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이 원본(감가상각비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권증서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며, 수수한 수익(금리상당액)은 수입이자로 益金計上한다.

라) 信託終了時

委託者만이 信託元本の 受益者인 신탁에 있어서는 당해 信託財産을 受託者로부터 受益者에게 이전할 때의 자동차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된다.

7) 土地信託

가) 信託契約時

信託財産을 委託者로부터 受託者에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므로 부동산취득세, 특별토지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비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나) 信託期間中

건물신축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고, 사업소세는 東京都의 특별구, 지정도시 기타 특정시에 있어서 사업소용 가옥의 신·증축시 부과되며,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고정자산과세대상에 등기·등록되어 있는 소유자(受託者)에 대해 과세된다. 信託財産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受益者가 信託財産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및 법인세의 규정이 적용된다. 受益者가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受益者가 개인일 때는 양도손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受益者가 법인일 경우 양도익이 발생할 때는 익금에, 그리고 양도손이 발생한 때는 손금에 각각 계상된다. 신탁설정 후 受益者를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며(법인세는 제외), 受益者가 사망하여 委託者의 相續人(自益信託의 경우) 또는 委託者의 相續人(他益信託의 경우)이 수익권을 상속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 信託終了時

부동산취득세와 특별토지보유세는 委託者만이 信託元本の 受益者인 신탁에 있어서는 受託者로부터, 그리고 원본의 受益者에게 信託財産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형식적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단, 신탁기간중에 수익권의 양도 등이 있고 受益者가 당초의 委託者와 다를 때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委託者만이 信託元本の 受益者인 신탁에 있어서 당해신탁재산을 신탁종료에 의해 受益者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단, 신탁기간중에 수익권의 양도 등이 있고 受益者가 당초의 委託者와 다를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 신탁종료에 의한 受託者로부터 受益者로의 信託財産의 이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8) 特定贈與信託(特別障礙者扶養信託)

가) 信託設定時

개인이 특별장애자를 위한 他益信託을 설정할 때 세법상의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特別障礙者扶養信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장애자를 위한 특례조치로서 그 신탁수익권가액 중 일정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他益信託 설정시에 부과되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나) 收益發生時

信託財産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자특정의 신탁이므로 그 受益者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信託財産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종류가 결정된다.

다) 委託者死亡時

委託者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을 받는 신탁수익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것이라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9) 公益信託

公益信託의 과세원칙은 信託財産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委託者가 信託財産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한편, 受益者가 한정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委託者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信託設定時

과세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가 있다. 첫째, 委託者가 개인일 경우에는 인정특정공익신탁의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

출한 금전에 대해서는 특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금전을 인정특정공익신탁에 각출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전액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委託者가 법인일 경우에는 특정공익신탁의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한 금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보아 일반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인정특정공익신탁으로의 각출은 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특별기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나) 收益發生時

특정공익신탁의 信託財産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委託者에게의 과세는 없으며 受託者에게의 과세도 배제된다.

다) 給付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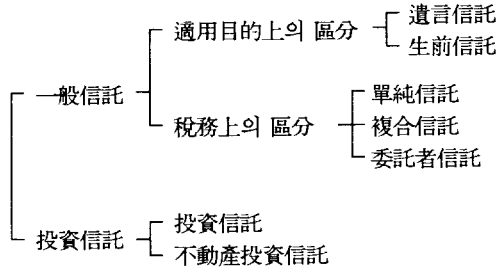
公益信託의 급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委託者가 개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그리고 委託者가 법인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나, 특별로 규정에 따라 대장성대신이 지정하는 인정특정공익신탁 및 학자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 소득세 등도 비과세된다.

라) 委託者死亡時

수익자불특정 신탁의 委託者에 대해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는 신탁에 관한 권리는 그 相續人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 단, 公益信託의 경우 相續人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의 과세가 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2. 美國의 投資信託

가. 美國의 信託制度



1) 一般信託(Regular Trust)

일반신탁은 일종의 사적 계약이므로 각 주의 재산법, 유산·신탁관리법에 따라 재산권의 소유 또는 受託者의 의무 등이 정해진다. 또한 은행이 受託者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은행규제법이 추가로 적용된다.

가) 運用目的上的 區分

일반신탁은 운용목적상 크게 유언신탁과 생전신탁으로 구분된다.

(1) 遺言信託(Testamentary Trust)

遺言信託이란 委託者(Testator)의 유언의 일부로 委託者의 사망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으로서 주로 상속재산의 관리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은 委託者가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지나, 委託者의 사망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망자의 유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망직후부터 상속자에게 배분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산(Estate)을 세무상의 신탁자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被相續人이 임대빌딩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유언서에는 그

빌딩을 1년 안에 처분하여 판매가 중 절반은 미망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한 遺言信託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언했을 경우에, 被相續人이 사망해서 빌딩이 팔릴 때까지는 유산신탁이 성립되어 그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 등은 유산신탁 차원에서 소득 신고하여야 한다. 그 후 빌딩이 매각되면 유산신탁은 해체되며 자녀에게로의 분배부분은 遺言信託에서 관리하게 된다.

(2) 生前信託(Inter Vivos Trust)

遺言信託과는 달리 委託者의 생존시에 효력을 나타내는 신탁으로서 신탁계약과 동시에 信託財産의 명의가 受託者의 명의로 변경된다.

나) 稅務上의 區分

세무상 신탁의 종류는 단순신탁과 복합신탁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受益者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도 委託者에게 소득이 귀속되는데 이를 委託者信託이라고 한다.

(1) 單純信託(Simple Trust)

單純信託은 신탁계약상 당해연도의 소득을 원칙적으로 受益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信託制度이지만, 單純信託으로 분류된 때에는 信託所得이 사실상 분배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또한 信託所得에선 양도소득이 제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연도에 배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單純信託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일반신탁에선 信託所得과 원금의 受益者가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양도소득은 원금을 증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 複合信託(Complex Trust)

複合信託이란 單純信託을 제외한 모든 신탁인데, 信託所得이 분배되지 않고 누적될 경우에 複合信託이 성립되는 것이다.

(3) 委託者信託(Grantor Trust)

세법상 信託所得이 受益者에게 귀속되지 않고 委託者에게 귀속되는 신탁을 委託者信託이라고 한다. 이 신탁은 신탁의 委託者와 受益者가 동일하거나 委託者가 임의로 신탁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이 경우 信託所得 중 委託者 귀속부분은 委託者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委託者信託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 ① 신탁계약상 신탁자산이나 信託所得이 委託者에게 복귀하는 경우에 委託者信託이 발생한다(‘復歸權[Reversionary Interest]’의 조건).
- ② 신탁계약상 委託者의 배우자는 委託者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신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소유하면 委託者가 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委託者信託으로 분류된다(‘配偶者의 權限’의 조건).
- ③ 신탁계약상 委託者가 수익대상자를 임의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 委託者信託이 성립된다(‘受益者 選擇’의 조건).
- ④ 委託者가 신탁의 재산운용에 관리권한을 가지고 신탁과의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委託者信託이 성립된다(‘管理權限’의 조건).
- ⑤ 委託者가 신탁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委託者信託이 성립된다(‘解約權限’의 조건).

2) 投資信託(Investment Trust)

投資信託은 일반신탁과 달리 개인의 유산상속이나 미성년자를 위한 재산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 또는 재산증식목적으로 운용되는 신탁을 말한다.

가) 投資信託의 種類

(1) 狹義의 投資信託(Mutual Fund / Regulated Investment Company)

美國에서 投資信託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Mutual Fund가 있다. 세법상의 정식 명칭은 Regulated Investment Company라고 한다. 이같은 투자신탁회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총수입 중 90% 이상이 배당소득, 이자소득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의 증권이나 채권으로부터의 양도소득이 총수입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다음 조건이 갖춰지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첫째로 당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90% 이상을 주주(투자가)들에게 배당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⁴⁾. 둘째, 자산의 50%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야 하며, 자산의 25% 이상을 단일 발행자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2) 不動產投資信託(Real Estate Investment Trust)

不動產投資信託이라는 부동산투자전문 合同運用信託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성립된다. 첫째, 부동산임차료, 부동산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유가증권양도차익, 부동산세환급(Property Tax Refund), 그리고 저당물처분소득이 전체소득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전체소득의 75% 이상이 부동산임차료, 부동산양도차익, 부동산담보대출이자 등의 부동산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셋째, 보유기간 12개월 미만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이나 보유기간 4년 미만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전체소득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4)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과 달리 양도차익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신탁회사에게 보유선택권이 있다.

또한 분기말 기준으로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부동산담보대출 포함), 현금 또는 공채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공채는 제외) 투자비율이 회사 전자자산의 25% 미만이어야 하며, 자산의 5% 이상이 단일 발행자에 국한되거나 단일 발행자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美國의 信託課稅

1) 一般信託의 課稅

가) 委託者에 대한 課稅

(1) 所得稅(Income Tax)

委託者信託(Grantor Trust)이 아닌 일반신탁에서는 委託者에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신탁계약과 동시에 受託者의 명의로 이전되면서 委託者와 신탁자산 그리고 신탁소득간의 관계는 단절된다.

(2) 讓渡所得稅(Capital Gains Tax)

가격이 올라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을 受託者의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委託者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受託者나 受益者의 차원에서 그 재산의 원가로 委託者의 취득가액으로서 계속 유지하며, 受託者나 受益者가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에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遺言信託의 경우 위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기초가액이 된다.

(3) 贈與稅·相續稅(Gift / Estate Tax)

委託者가 신탁에 재산을 양도하면 생존시에는 증여세, 그리고 遺言信

託의 경우에는 유산세(상속세)를 내게 된다.

나) 受託者에 대한 課稅

美國 세법상 受託者에 대한 과세는 信託財産 자체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委託者信託을 제외한 모든 信託所得은 信託財産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1) 課稅標準

가장 중요한 공제사항은 수익자 배당금공제이다. 이는 受託者가 당해 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소득금액이며, 이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지불하더라도 발생연도에 즉시 전액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의 최대 한도는 배당가능소득(Distributable Net Income)이며, 이는 신탁계약상 배분이 가능한 경제적(장부상) 당기순이익의 개념이다.

(2) 稅率

신탁자산 즉 受託者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1995년 세율기준)⁵⁾.

과 세 표 준 (U.S. \$)		
<u>Over</u>	<u>But Not Over</u>	<u>세율 (%)</u>
0	1,550	15
1,550	3,700	28
3,700	5,600	31
5,600	7,650	36
7,650	-	39.6

5) U. S. Internal Revenue Code, *Form 1041(U. S. Income Tax Return for Estates and Trusts)*, Schedule G-Tax Computation.

위의 세율은 개인소득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委託者가 절세목적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고소득자가 자산의 일부분을 신탁을 통해 투자하면서 신탁의 낮은 세율을 이용해 자산을 축적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 受益者에 대한 課稅

(1) 源泉徵收

신탁으로부터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다.

(2) 綜合所得合算

信託所得은 受益者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3) 信託所得의 區分

信託所得은 철저한 導管理論(flow-through, pass-through, 또는 conduit theory)에 의하여 신탁 내에서의 모든 성질이 유지된다. 따라서 受託者는 信託所得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다. 구분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공채이자소득, 단기양도소득, 장기양도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세법상 受益者가 종합소득신고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열하여야 한다. 공제사항도 세법상 구분이 필요하다면 항목별로 통보된다.

2) 投資信託의 課稅

投資信託의 경우 일반신탁과 달리 증여성 재산관리의 목적보다는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委託者와 受益者가 동일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 委託者 · 受益者에 대한 課稅

(1) 配當所得

투자신탁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도 일반신탁에서와 마찬가지로 委託者 · 受益者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나, 일반신탁과 다른 점은 信託所得의 구분에 있다. 信託導管理論에 의한 일반신탁의 소득구분과는 달리 투자신탁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은 일반배당소득(Dividends Distribution)과 양도소득배당(Capital Gains Distribution), 지방공채배당소득, 해외증권배당소득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양도소득배당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美國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최고 2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채에 전문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며, 해외증권에 전문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은 투자가 개인차원에서 네 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된다.

(2) 讓渡所得

투자신탁회사에의 투자는 투자회사의 수익증권을 사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회사의 수익증권 자체를 사고 팔 수 있으며, 이때 양도차익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일반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나) 受託者(投資信託會社)에 대한 課稅

(1) 源泉徵收

세무구조상 납세자에 관계없이 원천징수가 없다.

(2) 法人稅

투자신탁회사는 당해연도 배당 및 이자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들

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정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 讓渡所得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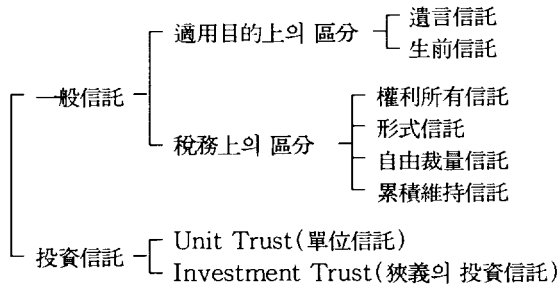
세무제도구조상 납세자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다. 受益者들에게 배분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은 투자회사 차원에서 비과세이다. 투자신탁회사의 당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이 受益者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반면에 양도차익소득은 투자신탁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유보될 수도 있다. 미배분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의 과세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로, 미배분 양도소득에 대해 투자신탁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법인세는 순수하게 투자신탁회사 차원에서 결정되며, 세율도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나 최고세율은 34%를 한도로 하고 있다.

둘째 단계로, 투자신탁회사는 각 受益者에게 지분율에 따라 과세된 미배분 양도소득금액과 납부되는 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受益者는 통보받은 미배분 양도소득과 세액을 본인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受益者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투자신탁회사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 英國의 投資信託

가. 英國의 信託制度



1) 一般信託

가) 運用目的上的 區分

英國에서도 美國과 마찬가지로 일반신탁은 운용 목적상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며, 그 효력도 동일하다. 즉, 委託者의 사망시 효력을 발생하는 遺言信託과 委託者의 생존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生前信託으로 구분된다.

나) 稅務上的 區分

세무상의 구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美國의 單純信託과 유사한 권리소유신탁과 형식신탁이 있으며, 동시에 美國의 複合信託과 유사한 자유재량신탁과 누적유지신탁이 있다. 또한 美國과 마찬가지로 세무상 신탁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委託者信託 개념도 존재한다.

(1) 權利所有信託(Interest in Possession Trust)

受益者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과 동시에 수익권을 가진다면 權利所有信託이 형성된다. 소득이 발생한 후에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受託者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소유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受益者만을 위해서 누적되는 것이라면 허용된다. 또한 해약권한 등이 있어도 권한이 행사되기 전까지 受益者의 수익권행사(Immediate Entitlement)에 지장이 없으면 權利所有信託이 성립되는 것이다.

(2) 形式信託(Bare Trust)

形式信託은 受益者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절대적인 수익권을 가지고 있으나, 미성년이라든가 기타 법적이유로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못하고 受託者를 필요로 할 경우에 성립된다.

(3) 自由裁量信託(Discretionary Trust)

自由裁量信託은 信託所得이 受託者의 자유재량에 의해 受益者에게 배분되는 신탁을 의미한다.

(4) 累積維持信託(Accumulation and Maintenance Trust)

累積維持信託이 형성되려면 受益者가 25세 이전에 신탁재산을 배분받거나 또는 권리소유권을 받아야 한다. 또한 受益者 이외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소유권이 없어야 하며, 受益者의 생계유지와 교육을 위한 지출 이외의 모든 소득이 누적되어야 한다. 累積維持信託은 25년 이상의 기간을 초과되면 안되며, 신탁의 모든 受益者가 동일한 祖父母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投資信託

가) 投資信託의 種類

(1) Unit Trust(單位信託)

英國의 대표적인 投資信託은 契約型·開放型 投資信託의 일종인 Unit Trust이다. 이는 주식에 투자하려는 불특정다수인의 소액자금을 모집하여 전문적인 투자대행기관에 의해 주식에 집합적으로 투자하는 契約型(Contract-Type)이며⁶⁾, 또한 발행증권인 Unit Certificate의 추가설정과 환매가 자유로운 開放型 投資信託(Open-ended Trust)이다⁷⁾.

6) 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Investment Board)의 인가를 받은 신탁계약(Trust Deed)을 기초로 하여 委託者와 受託者간에 체결한다.

7) Unit Trust는 계약형인 동시에 개방형(open-end)이므로 우리나라나 日本의 投資信託制度和 매우 유사하다.

Unit Trust는 주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의 규제를 받으며 증권투자위원회(Securities and Investment Board)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세법상 특이한 점은 다른 법인이나 투자기관과 달리 펀드 내 양도소득이 비과세인 것이다.

Unit Trust는 정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며 펀드당 4개 종목은 信託財産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종목은 종목당 5%를 초과하지 못한다. 펀드의 10% 이내에서 비상장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회사 총발행주식의 29%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2) Investment Trust (狹義의 投資信託)

Investment Trust는 Unit Trust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會社型 投資信託(Corporate-Type Trust)이다. 따라서, Investment Trust는 자본구성, 주주구성, 거래소상장 등 주식회사의 보편적 특성을 향유할 수 있다. 또 Investment Trust는 설립자본을 가지고 회사법과 정관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로서,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며 또한 자본구성을 함에 있어서도 보통주, 우선주, 회사채 등을 모두 발행할 수 있다. 또한 Unit Trust와 달리 추가설정이나 환매가 금지된 閉鎖型인 까닭에 자산규모의 확장에 커다란 제한을 받고 있다.

Investment Trust도 금융서비스법과 증권투자위원회(SIB)의 규제를 받지만, Unit Trust에 비해 운용대상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英國의 投資信託制度인 Unit Trust와 Investment Trust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表 Ⅲ-1〉 英國의 Unit Trust와 Investment Trust의 比較

	Unit Trust	Investment Trust
설립 형태	계약형 및 개방형	회사형 및 폐쇄형
적용 법규	신탁계약의 적용	회사법의 적용
자본금	가변자본금	고정자본금 · 증자 : 주주총회 의결 · 감자 : 주주총회 의결과 법원승인
신탁기간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	신탁기간이 없음
매각	순자산가치에 따라 결정	순자산가치와 관계없이 증권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거래비용	1% 인지세, 0.25% 증서세, 기본수수료와 매매수수료	1% 인지세, 1.65% 중개수수료
수익의 재투자	추가설정이 가능하고, 분배금의 자동재투자	자본증가가 어렵고, 수익의 재투자가 없음
차입	차입이 불가능함	차입이 가능함
광고	광고는 승인후 허가됨	광고가 불허됨
해외투자	해외투자의 의존도가 낮음	해외투자의 의존도가 높음
투자대상	상장주식 및 채권	실물자산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
세제	분배소득세, 매매차익	법인세

나. 英國의 信託課稅

1) 一般信託의 課稅

가) 委託者에 대한 課稅

(1) 所得稅와 相續稅

委託者의 소득세와 상속세에 관련된 사항들은 美國과 유사하다.

(2) 讓渡所得稅

평가절상된 자산을 위탁할 경우 기본적으로 委託者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자유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의 경우나 사업자산의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이연가능하다. 즉 委託者의 원가가 유지된다(이러한 課稅移延을 Hold-over Relief라고 함).

나) 受託者에 대한 課稅

美國과 마찬가지로 信託財產(trust) 자체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편의상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受託者(trustee)를 납세자라고 부를 수 있으나 사실상 信託課稅에 있어서 受託者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受託者는 이렇게 과세상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信託所得의 성격이나 신탁계약에 따라 단순히 신탁을 통하여 발생된 소득을 분배해 주는 導管(conduit)의 역할만 하기도 한다.

(1) 課稅標準

受託者에 과세하는 방법은 개인소득세 과세와 유사하다. 과세소득 산정시 受託者의 총수입이란 개인소득세상의 총수입과 동일하다. 여러 가지 공제사항들 또한 개인소득세와 비슷하다.

수탁자과세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은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信託所得은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5% 세율만 적용되며 누적유지신탁의 경우에는 추가세율 10%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基本稅率課稅

- ① 과세소득의 범위 : 개인소득세법상 모든 과세소득이 곧 受託者의 과세소득이며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도 개인소득세와 동일하다. 다만 受託者를 거치지 않고 受益者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受益者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受託者가 허가한 경우의 소득은 受託者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 ② 공제사항 : 신탁운용경비는 과세 후 소득에서 지급되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세율과

세 또는 수익자 과세상에선 공제가 된다. 이자경비는 개인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면 受託者の 기본세율대상 소득에서도 공제되나 그렇지 않으면 신탁운용경비로 취급된다. 受託者도 개인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이월결손금 등이 공제된다. 그러나 受託者에게는 기초공제 등 인적공제가 없다.

- ③ 과세표준과 세율 : 결국 受託者는 총수입에서 공제대상 이자경비, 감가상각비, 결손금, 이월결손금만을 차감한 것이 곧 과세표준이며, 이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④ 원천징수 : 受託者가 받는 대부분의 수입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후에 지급한 금액이다. 배당소득은 20%, 은행이자소득은 25%로 각각 원천징수되며 납세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소득으로 보고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는다. 그러므로 추가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득(임대료 등)이 발생하면 受託者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追加稅率課稅

당해연도 소득 중 신탁계약상 受益者에게 분배되지 않고 누적되거나 受託者의 자유재량에 의해 분배되는 소득에는 추가세율 35% 즉, 기본세율 25%에 10%가 추가합산 적용된다. 추가세율의 목적은 累積信託(Accumulation Trust)이나 自由裁量信託(Discretionary Trust)이 受託者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개인최고세율 40%에 비해 낮은 25%)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하는 절세도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예외로는 信託所得과 자산에 대한 절대적 수익권을 가진 미성년자를 위해 누적되는 소득이나 공익신탁, 퇴직연금신탁 등이 있다.

다) 受益者에 대한 課稅

(1) 源泉徵收

위에서 언급한 受託者에게 과세되는 25% 또는 35%의 세금이 원천징수세에 해당되며 受益者에게 배당금 지불시에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다.

(2) 綜合所得合算

수익자 차원에서 信託所得은 배당연도 또는 信託所得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다. 이때 과세금액은 受託者가 낸 세금을 더한 총소득액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시에 受益者의 다른 소득금액에 따라 신탁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환급될 수가 있다.

(3) 信託所得區分

일반적으로 信託所得이 누적되지 않고 발생연도에 배분되는 경우 受益者에 과세하는 차원에서 신탁 내에서의 소득내용이 유지된다. 즉 이러한 경우는 信託導管理論이 적용되어 受益者가 직접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受託者는 信託所得을 분배하는 導管에 불과하다. 導管理論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성인수익자가 信託所得과 자산에 절대적 수익권을 지닌 경우
- ② 성인종신수익자(life interest)가 소득발생과 동시에 수익권을 지닌 경우
- ③ 미성년수익자가 信託所得과 자산에 절대적 수익권을 지닌 경우

위와 같지 않은 경우의 信託所得은 신탁의 실체를 존중하여 信託所得으로만 구분되며 종합소득신고시 배당소득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2) 投資信託의 課稅

가) 委託者 · 受益者에 대한 課稅

(1) 綜合所得合算課稅

Unit Trust의 배당금은 개인투자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 Unit Trust의 수익증권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또한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된다.

(2) 所得內譯의 區分

일반신탁과는 달리 Unit Trust의 배당금은 導管理論에 의한 受益者次元에서의 소득구분이 없다.

(3) 所得稅 源泉徵收

Unit Trust의 배당금은 25%의 기본세율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종세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40%인 투자자는 Unit Trust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내게 되나 기본세율 납세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終了된다. 다만 소득세율이 20%인 저소득자에 대한 환급은 없다.

(4) 讓渡所得稅

Unit Trust 수익증권 자체를 매매할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소득은 연간 기본공제액 5,800파운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연간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현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팔았다가 곧 다시 매입함으로써 임의의 양도차익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나) 受託者에 대한 課稅

(1) 源泉徵收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데, 원천징수소득의 대표적 예는 영국법인의 배당금이다. 英國의 법인세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Imputation System으로서 영국법인의 배당금은 과세후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된다.

(2) 法人稅

Unit Trust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3) 讓渡所得課稅

투자신탁회사(Unit Trust) 차원에서는 양도소득의 배분 여하와 관계 없이 전액 비과세이다.

4. 英國 · 美國 投資信託의 比較

美國의 투자신탁제도는 英國의 폐쇄형 Investment Trust Company를 모방하여 1920년대초 최초로 도입되어 1929년 경제대공황때까지 폐쇄형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았던 폐쇄형 투자회사들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 후 잠시 동안 투자종목이 고정되었던 固定型 投資信託이 유행하였으나, 결국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부여한 개방형 투자회사인 Mutual Fund⁸⁾를 중심으로 미국투

8) 美國에서 Mutual Fund는 投資信託의 총자산규모의 약 95%를 차지하며, 1991년 1월에는 순자산 규모가 1조 39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Mutual Fund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산탁이 발전되어 왔다. 반면 英國은 1868년 3월에 최초의 投資信託인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가 설립된 이후 10개의 投資信託이 런던에 창립되었는데, 모두 투자종목이 고정된 投資信託이었다. 그 후 1879년에 기존의 契約型 投資信託은 위법이라는 소송사건의 판결로 契約型 投資信託은 해체되고 會社型 投資信託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會社型 投資信託이 다시 퇴조하고 당시 美國에서 유행하던 Mutual Fund의 개방형 특성을 도입한 契約型 投資信託인 오늘날의 Unit Trust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으로 인하여 英國·美國 두 나라의 投資信託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表 Ⅲ-2>와 <表 Ⅲ-3>에서 신탁상품의 종류와 과세에 관한 英國과 美國의 차이를 비교·설명하고 있다.

<表 Ⅲ-2> 美國과 英國의 信託種類 比較

		美國	英國
일반 신탁 ¹⁾	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언신탁: 委託者의 유언의 일부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이용되며, 委託者의 사망시 효력이 발효됨. -생전신탁: 委託者의 생존시에 효력이 발효되며, 신탁계약과 동시에 信託財産의 명의가 受託者로 변경됨. 	美國의 경우와 동일함.
	세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신탁: 신탁계약상 당해연도의 소득을 受益者에게 분배함. -복합신탁: 단순신탁 이외의 모든 신탁으로, 信託所得이 분배되지 않고 누적됨. -위탁자신탁: 세법상 信託所得이 受益者가 아닌 委託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委託者와 受益者가 동일인이거나 委託者가 임의로 신탁계약을 취소할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성립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소유신탁: 受益者가 信託所得의 발생과 동시에 수익권을 취득할 때 성립함. -형식신탁: 受益者가 信託財産에 대한 수익권은 보유하되 미성년자 및 기타 법적 이유로 受託者를 필요로 할 경우 성립. -자유재량신탁: 受託者의 자유재량에 따라 信託所得이 受託者에게 분배됨. -누적유지신탁: 受益者가 25세 이

〈表 Ⅲ-2〉의 계속

		美國	英國
일반 신탁 ¹⁾	세무 목적		<p>전에 수익권을 취득하여 信託所得이 누적되는 경우로 受益者의 생계와 교육지출 이외의 모든 소득이 누적됨.</p> <p>앞의 두 가지는 美國의 ‘단순신탁’,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신탁’과 유사한 형태임.</p>
	투자 신탁 ²⁾	<p>- Mutual Fund :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신탁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를 통하여 信託財產이 투자되는 형태.</p> <p>-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 부동산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合同運用信託.</p>	<p>- Unit Trust : 불특정다수의 소액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대행기관이 주식에 집합적으로 투자하고, 발행증권인 Unit Certificate의 추가설정과 환매가 자유로운 계약형 및 개방형 투자신탁.</p> <p>- Investment Trust :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로, 추가설정이나 환매는 할 수 없는 회사형 및 폐쇄형이 있음.</p>

註 : 1) 개인의 상속 및 유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2) 투자 및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表 Ⅲ-3〉美國과 英國의 信託課稅 比較

		美國	英國
일반 신탁 ¹⁾	委託者	委託者에 대해서는 증여 및 상속세가 부과되며, '위탁자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음.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는 美國과 유사하며, 평가절상된 자산의 위탁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受託者	세법상 受託者에 대한 과세는 信託財産 자체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여 '위탁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信託所得은 信託財産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됨.	受託者에 대한 과세는 美國과 마찬가지로 信託財産 자체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며, 과세방식은 개인소득세와 유사하지만 과표와 관계없이 25%세율이 적용되고 누적유지신탁의 경우 10%의 추가세율로 원천징수됨.
	受益者	信託所得이 受益者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고 신탁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음. 信託所得은 도관이론에 의거하여 소득발생의 종류에 따라 신고해야 함.	信託所得은 배당연도에 혹은 수익권 취득시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며, 信託所得이 누적되지 않고 발생연도에 배분되는 경우 受託者는 단순히 信託所得의 분배도관으로 인정되어 이때의 소득구분내용이 유지됨.
투자 신탁 ²⁾	委託者 /受益者 ³⁾	신탁배당금은 委託者(受益者)의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며, 일반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배당, 지방공채배당소득 및 해외증권배당소득 등으로 구분·처리됨. 또한 委託者(受益者)가 투자회사의 수익증권 매매에서 획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배당금은 25%세율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종세율이 정해지며, 수익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기본공제액(5,800파운드)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됨.
	受託者	투자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법인세가 비과세인 대신 당해연도 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의무를 지게 됨. 미배분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受益者에게는 미배분 양도소득과 信託會社의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됨.	투자신탁회사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과 관련된 과세는 없음.

註: 1) 개인의 상속 및 유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2) 투자 및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3) 投資信託에 있어서 委託者와 受益者는 동일인인 경우가 일반적임.

IV. 課稅原則과 信託課稅理論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상에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賦課·徵收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¹⁾. 또한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따라 과세를 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實質課稅의 原則이 있다. 實質課稅의 原則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租稅法律主義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租稅法律主義에 따라 여러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규정형식을 형식적으로 지나치게 중요시할 경우에는 국민의 財產權을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이 붕괴될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규정의 내용을 형식보다는 목적 내지 실질내용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實質課稅의 原則이다. 즉, 實質課稅의 原則은 헌법상 선언된 租稅法律主義의 原則을 과세운영상 보완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 實質課稅의 原則

實質課稅의 原則에 의하면 租稅法の 解釋과 適用은 租稅法에 규정된 형식적 개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세법의 이론상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념²⁾에 의해야 한다³⁾. 實質課稅는 納稅義務가 누구에게 歸屬되는가를

1) 헌법 제38조 및 제59조

2) 연혁적으로 독일 조세기본법이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경제적 의의'를 고려할 것을 규정한 데서 기원한다(金斗千, 『租稅法』(1987), p. 149).

3) 李喆晟, 『最新 租稅法』(1993), p. 89.

결정하여 과세하는 ‘所得歸屬者の 實質課稅’와 去來內容을 分析하고 그 실체를 파악해서 표면에 나타나는 去來內容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會計事實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去來內容의 實質課稅’로 구분된다⁴⁾.

가. 所得歸屬者の 實質課稅

所得歸屬에 관한 實質主義는 「소득세의 목적을 위해 나무의 열매를 그것이 열린 나무로부터 다른 나무의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나무와 열매의 이론 : Tree and Fruit Theory)」라는 판결취지⁵⁾에서 시작된 課稅理論으로, 소득귀속에 관한 實質課稅는 과세물건(또는 원인이 되는 행위나 사실)이 형식상으로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 조세귀속의 판정에 있어서 후자 즉, 實質的 歸屬者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과세물건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양자간의 對內的 關係에 있어서는 예컨대 익명조합처럼 소득의 귀속이 법률상 정하여져 있는 때에 한해서 실질조세귀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法的 實質主義와, 소득의 귀속이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귀속하면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經濟的 實質主義로 나누어지고 있다. 獨逸의 조세기본법 주창자인 Enno Becher는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형식적 개념에 구애되지 않고 그 문언에 표현된 實質的이고 經濟的인 意義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사용한 외관적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實質的·經濟的 意義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후자의 입

4) 신찬수·정창모, 『세법개론』(1977), p. 74

5) 미국 Holms 판사의 Lucas vs. Earl 사건에 대한 판례임(金炫彩, 『現代稅法의 基本問題(I)』(1986), p. 69).

장에 서고 있지만, 이는 實質課稅原則을 지나치게 擴大하는 경향이 있어 이 학설은 아직 소수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法的 實質主義가 通說로 認定되고 있다⁶⁾.

國稅基本法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 去來의 歸屬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稅法을 適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法人稅法에서도 「資産 또는 事業에서 생기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所得歸屬者에 관한 實質課稅의 原則을 宣言하고 있다⁷⁾.

소득귀속에 관한 實質課稅原則이 적용되는 예로는 名義信託과 讓渡擔保가 있다. 첫째, 名義信託은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公簿上的 所有名義가 受託者에게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權利·義務를 부담하지 않는 신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용어상 신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할 뿐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受託의 權利를 행사할 수 없고 재산의 管理處分權을 갖지 못하는 점에서 信託法上的 信託과 차이를 보여 주며, 현행 실정법상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명의신탁과 같이 수탁자에게 所有權의 名義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積極的·排他的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受動信託(Passive Trust)이라고 하여 신탁이론상을 무효로 취급하고 있다⁸⁾.

6) 李喆晟, 전제서, p. 91.

7)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實質課稅의 原則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선언적·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裴瑛錫, 『信託所得 課稅에 관한 考察』(1994), p. 18).

8) 대법원판례, 78누396 판결, 1979. 1. 16.

둘째, 讓渡擔保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의 移轉登記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所有權 移轉登記를 抹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는 소유권 이전형의 변칙적인 담보를 말한다. 즉,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抵當權이나 質權과 같은 擔保物權보다 더 강력한 물권적 효과를 갖는 소유권이전을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설정해 주는 非典型的인 擔保制度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자(수탁자)나 양도담보권자가 소유명의를 갖게 되지만, 실질소유자는 각각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 설정자이기 때문에 소득귀속에 관한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각각의 실질상 소유자인 名義信託者와 讓渡擔保設定者가 納稅義務者가 된다. 所得歸屬者의 實質課稅原則을 선언한 사례는 행정해석인 기본통칙에도 규정되어 있다⁹⁾.

나. 去來內容의 實質課稅

國稅基本法은 「세법 중 課稅標準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所得·收益·財產·行爲 또는 去來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適用한다」고 하여 去來內容에 관한 實質課稅原則도 채택하고 있으며¹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통상 私人 間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

9) ①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4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1-2-9) ②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10 제1항).

10)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去來內容에 관한 實質課稅原則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팔의 길이의 범위 내에서 머무르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넘어서 무엇인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곳에 반드시 실질과 다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팔의 길이 이론(Arm's Length Rule)¹¹⁾에 비유되어 설명되는 것으로서, 소득이나 수익 또는 행위나 거래에 있어서 그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所得의 內容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¹²⁾.

다. 信託所得課稅와 實質課稅의 關係

信託이란 信託設定者와 信託을 引受하는 자와의 특별한 信託關係에 기하여 信託자가 特定의 財產權을 受託자에게 移轉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受託자로 하여금 受託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特定한 목적을 위하여 그 財產權을 管理·處分하게 하는 法律關係이다. 이 같이 信託에 있어서는 受託자가 信託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으로는 완전한 所有權者로서 管理·處分할 수 있으나 對內的으로는 受託자에 對해서는 所有權을 主張할 수 없고 다만 信託목적을 爲하여 管理·處分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受託자는 信託財산을 自기의 固有財産과 分離해 管理하여야 하며, 受託자 自신의 상속財産에도 속하게 할 수 없다.

信託財産의 運用에서 발생한 利益은 형식상 受託자에게 歸屬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익은 최종적으로 受託자에게 귀속되고 과세되기 때문에 信託은 實質課稅原則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수익은 법형식적으로는 受託자에게 귀속되나, 受託자는 이 수익을 受託자에게 分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¹³⁾ 실질적인 所得

11) '독립기업간 거래원칙' 또는 '공정거래의 원칙'이라고도 불리운다.

12) 金炫彩, 전계서, p. 70.

13) 영업신탁인 경우에는 일정 수수료인 信託보수를 차감한 후 受託자에게 분배한다.

歸屬者인 수익자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귀속자인 수탁자에게도 과세할 경우 重複課稅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한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實質課稅의 原則을 선언하고 있다¹⁴⁾.

相續稅法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서 신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他益信託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贈與한 것(贈與擬制)으로 간주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⁵⁾.

또한 地方稅法에서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賦課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

2. 信託所得 課稅理論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課稅理論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견해인 信託實體理論과 信託導管理論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의 주체로 인정하여 信託財產 歸屬所得에 대하여 課稅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고, 후자는 신탁재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

14)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는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탁회사는 이러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15) 상속세법 제32조

16)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

탁재산을 다만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導管(pipe)으로 보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그 受益者에게 個別的으로 課稅한다는 견해이다.

가. 信託實體理論

信託實體理論은 日本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재산이 아닌 受託者를 課稅主體로 하여 信託稅制를 運營하는 것이라는 설¹⁷⁾과 信託財産 自體를 課稅主體로 인정하여 稅法理論을 構成하는 것이라는 설¹⁸⁾로 나뉜다. 전자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完全하게 귀속된다는 신탁행위에 관한 債權說의 영향을 받은 견해인 반면, 후자는 신탁재산이 독립된 법주체라는 입장을 취하는 實質的 法主體說의 영향을 받은 주장이다.

信託實體理論이 信託을 實體로 보고 課稅를 하고자 함은 신탁재산을 獨立된 納稅의 主體로 보는 것이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나 수탁자를 과세의 주체로 보고 있는 전자의 견해에 있어서도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리하여 독립된 실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후자의 견해와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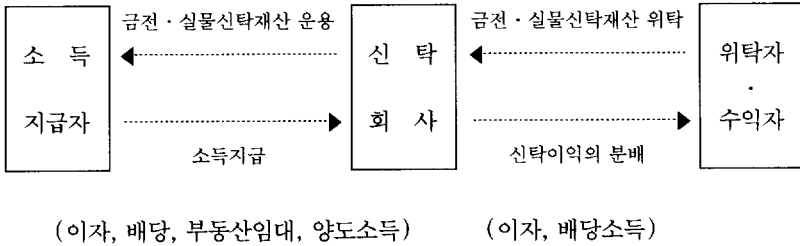
한편 折衷說은 신탁재산은 우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하고, 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그 재산권의 일부가 이전하되, 재산에 관한 권능의 일부는 여전히 수탁자에게 남아 있다고 하면서 수탁자에게 머물고 있는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주체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吉矣田勳, 『信託稅法: 稅立法の立場から』, 信託論叢, 1985, p. 291.

18) CPA實務研究會, 『新金融商品の會計と稅務』(1990), p. 226.

19) 배동필, 「신탁재산귀속소득과 그 과세이론」, 『서은조사』, 1996년 여름, p. 41.

信託實體理論에 따르면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상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信託利益의 分配金은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이 된다고 한다.



實體理論에 의하면 과세의 시기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수익을 分與받을 때이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되게 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신탁보수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受益者에게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이기 때문에 綜合課稅의 對象이 되게 된다.

信託實體理論이 신탁재산을 獨立된 課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信託制度의 社會的·經濟的 役割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信託所得이 최종적 귀속자인 수익자에게 귀속되기까지는 일단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이 獨立된 社會的·經濟的 制度로서의 풀(pool)인 신탁재산에 혼입되었다가 일정기간 후에 신탁이익이라는 하나의 課稅所得으로 여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信託實體理論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신탁에 있어서의 法律上 所有權이 受託者에게 있다는 점 둘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모든 收入과 支出은 外形上으로도 수탁자에게 歸屬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法人의 구성원인 株主 등 사원에게 法人의 利益을 分配해 주는 법인도 事實상 經濟的 觀點에서의 導管에 불과하다는 점 넷째, 외부에 나타나는 法的 形式에 따른 課稅이기 때문에 과세처리가 간명하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信託實體理論에 대한 비판으로 첫째, 세법은 實質課稅原則이 지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외면한 채 形式을 좇아 과세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신탁재산과 법인(특히 일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財産을 出捐하여 設立하는 財團法人)이 最終인 所得歸屬者에게 그 所得을 分配해 주는 導管에 불과하다는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는 같다 할지라도, 法人은 엄연히 法律에 의하여 법인격이 주어진 것이지만 信託財産은 법률에 의해 별도의 법인격이 주어지지 아니했음에도 이를 동일시하여 이론구성을 한다는 점은 현재의 법 제도를 逸脫한 論理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셋째, 외양에 따른 과세이므로 과세처리가 간명하다 하여 과세의 基本原則인 實質課稅原則까지도 違反할 수 있는 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 넷째,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信託實體理論은 과세의 單純化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累進稅率 構造로 되어 있는 所得稅를 回避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점 다섯째, 누진세제의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신탁의 수익자에게 과세를 하되, 重複課稅를 防止하기 위해 현재 개인들이 配當所得稅를 綜合所得에 合算申告할 때 配當稅額控除 등을 하는 조정적 장치를 導入한다면 오히려 課稅의 複雜化를 가져오는 맹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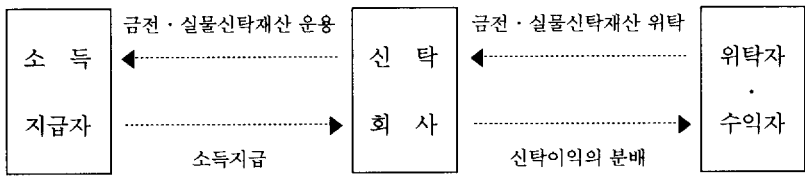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첫째, 實質所得 課稅理論과 信託所得 課稅理論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의 社會的·經濟的 機能을 고려하여 實體性을 인정하고 과세를 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질에 부합하며 둘째, 신탁에 대해 인격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신탁재산의 獨立性에 대해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신탁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實質課稅原則을 관철하고 合目的的인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하며 넷째, 信託所得이 수익자에게

20) 노형권 외, 『金融所得 總綱羅書 解説』(1995).

歸屬되는 때에는 所得稅를 賦課하고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重複課稅의 結果를 防止하기 위해 稅額控除를 해주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므로 信託實體理論이 累進稅制을 回避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²¹⁾.

나. 信託導管理論

信託導管理論은 信託財産을 獨立의인 實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익자에게 信託수익을 分配하기 위한 手段 또는 導管(conduit, pipe)으로 보아 信託所得에 대한 課稅는 分배하기 전의 運用과정에서 發生된 所得의 內容에 따라 稅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양도소득) (소득발생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導管理論은 信託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稅法을 적용하기 때문에 信託財産 運用내용별로 所得을 구분하고, 信託財産에 원천징수 대상所得을 지급하는 제3자(소득지급자)가 源泉徵收義務者가 된다. 또한 信託수익 결정시에 信託보수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信託수익으로 계상하며,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전혀 稅負擔을 부과할 수 없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21) 배동필, 전계논문, p. 43.

信託導管理論은 經濟的인 觀點에서 觀察하여 課稅한다는 實質課稅原則에 충실한 이론이라고 설명되면서도 다음과 같은 理論上的 限界가 지적된다²²⁾. 첫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이나 지출이 즉시 수익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일단 신탁재산에 머물렀다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에 수익자에게 지급됨에 따른 과세상의 시차가 발생됨을 설명할 수 없으며 둘째,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분배해주는 측면은 잘 설명하고 있지만, 금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에 신탁재산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측면은 설명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限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에는 株式과 債券 및 貸出利子와 配當金과 같은 利子所得과 증권의 매매이익과 같은 資本所得 등 서로 다른 과세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서 이를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課稅物件으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說得力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법인은 법률이 인격을 부여한 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법률이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지만, 國稅基本法과 法人稅法에서는 법률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는바²³⁾, 법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법률이 인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公的制度가 實質的으로 社會的·經濟的 機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信託導管理論과 信託實體理論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과세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²⁴⁾.

22) 노형권 외, 전거서.

23) 국세기본법 제13조와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24) 전국은행연합회, 『신탁세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5. 6.

〈表 IV - 1〉 信託導管理論과 信託實體理論의 比較

	信託導管理論	信託實體理論
1) 기본개념	-신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법 적용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상 주체로 인정
2) 소득 구분	-신탁재산 운용별로 소득 구분	-신탁이익 전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
3) 과세시기	-신탁재산에서 과세대상소득을 획득했을 때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분여받을 때
4) 원정의무자	-신탁재산에 원징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	-수탁자(신탁회사)
5)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신탁재산에 원징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제3자	-수탁자(신탁회사)
6) 신탁재산에서 타법인 주식취득시 수익자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배제 여부	-증자소득공제 배제함	-배제하지 않음
7) 신탁재산에서 수익자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해당되지 않음
8) 특수관계자 판단시 신탁재산에서의 소유주식 합산여부	-합산하여 판단	-합산되지 않음
9) 신탁보수를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하여 원징할 것인지 여부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원징	-차감한 후의 금액(신탁수익)에 대해 원징
10) 신탁재산 귀속채권이자 지급시 원징대상 여부	-원징하지 말아야 함	-원징해야 함
11) 비영리법인이 받는 신탁수익분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 가능부분	-신탁재산운용내용 중 ① 비영업 대금이자를 제외한 이자소득 부분과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부분과 ③ 기타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50%	-신탁수익 분배금 전부
12) 원정으로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종결가능여부(분리과세 가능여부)	-원정으로 납세의무종결이 불가능하며 신탁재산운용별로 구분하여 법인세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분리과세 가능
13)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과세방법	-신탁재산에서 주식·채권에 100% 운용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면 세부담이 없음	-기준금액 미만은 분리과세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V. 信託課稅의 現況

1. 信託商品別 課稅現況

가. 金錢의 信託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을 위탁받는 신탁은 신탁종료시에 수익자에게返還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金錢信託과 金錢信託 以外의 金錢의 信託(金外信託)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전신탁은 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의 특정 여부에 따라 不特定金錢信託(合同運用金錢信託), 特定金錢信託(單獨運用金錢信託)으로 나뉜다. 신탁소득과세에 관한 양대이론인 導管理論과 實體理論 중 어떠한 이론이 적용되는가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주장되는 바를 달리하고 있다.

1) 不特定金錢信託

不特定金錢信託이란 금전신탁 중 그 運用方法을 특별하게 지정하지 아니한 신탁을 말하며, 다수의 위탁자(수익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不特定金錢信託이 현행 은행의 신탁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元本補塡과 利益補足契約의 유무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가) 元本補塡과 利益補足契約이 있는 信託

- 一般不特定金錢信託
- 積立式目的信託(1993. 9. 1 폐지)

－開發信託

나) 元本補填契約만 있는 信託

- －家計金錢信託
- －企業金錢信託
- －老後生活年金信託
- －積立式目的信託 (1993. 4. 1 이후분)
- －個人年金信託
- －勤勞者退職積立信託

다) 元本補填과 利益補足契約이 없는 信託

- －國民株信託

不特定金錢信託의 합동운용의 結果가 수익자에게 分配되는 信託所得에 관한 課稅理論은 信託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주체로 인정하는 信託實體理論을 적용하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不特定金錢信託의 경우 信託회사로부터 수익자가 信託의 대가로 받는 分配金은 信託의 이익으로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이 된다. 소득세법도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信託의 利益」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¹⁾,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은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²⁾. 또한 合同運用信託의 이익을 계산할 때는 信託보수를 差減한 金額을 소득으로 보고 있다³⁾.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3)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계산시에는 信託보수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 중 비과세되는 매매차익 등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2) 特定金錢信託 및 金外信託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별히 지정하여 단독으로 운용되는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와 인수시 금전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金外信託의 경우에는 不特定金錢信託과 달리 信託導管理論과 信託實體理論 중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信託導管理論에 의하면 신탁이 애초에 없던 것으로 간주되는 까닭에 신탁수익으로 분배받는 소득을 신탁재산 운용내용별로 구분하여 예금이자, 채권매매이익, 주식매매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區分·課稅하게 된다⁴⁾. 이 경우 분배소득이 債券 또는 株式 등 有價證券의 賣買差益일 때에는 그 소득분에 대해 非課稅하게 된다. 반면에 信託實體理論에 의하면 금전신탁은 금전을 예탁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금전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당해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特定金錢信託(이하 金外信託 포함)·不特定金錢信託에 관계없이 모두 利子所得으로 간주된다⁵⁾. 즉, 신탁재산에서의 분배소득은 所得稅法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으로 취급되어 개인의 경우 기준금액(4,000만원) 이하는 分離課稅되고 초과분은 綜合課稅된다.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세법상의 '규정이 신탁의 종류에

- 4) 信託導管理論을 지지하는 입장인 국세청 유권해석으로는 소득 46011-1205, '93. 5. 1.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信託所得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과 소득 46011-2644, '94. 9. 16.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유가증권을 위탁자별로 관리·운용하도록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信託所得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형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함" 등이 있다. 기타 도관이론을 지지하는 견해로는 소득 46011-1231, '85. 12. 10. 과부가 46015-2329, '93. 9. 27. 등이 있다.
- 5) 소득 22601-258, '91. 2. 8.에 의하면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해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이라 하여 信託實體理論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 그 적용예를 명확히 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⁶⁾.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는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한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 또는 위탁자를 신탁재산 소유자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따라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는 총칙적인 규정에 따르면, 각 개별수익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⁸⁾. 즉, 信託導管理論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소득세법의 다른 개별적인 규정에서는 信託實體理論의 適用으로 信託所得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확정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이에 총칙적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탁과 개별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¹⁰⁾.

가) 信託導管理論의 主張

- ① 合同運用金錢信託과 달리 신탁재산을 수익자별로 單獨運用하는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 實質課稅原則에 부합되는 信託導管理論의 적용을 배제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 ② 元本補填과 利益補足契約은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金錢信託 즉, 不特定金錢信託에 한하여 허용하기 때문에¹¹⁾ 수탁자와 위탁자 및 수익자의 관계는 信託實體理論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이

6) 신탁의 종류에 따라 즉,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실체이론에 근거하는 반면에 금외신탁의 경우는 信託導管理論에 따른다는 해석도 존재한다(법인 22601-745, '92. 3. 31. 과 국심 46830-908, '93. 5. 4.).

7)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과 법인세법 제4조

8) 재경원 소득 46011-106, 1995. 7. 26.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9)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와 제17조 제1항 제5호

10) 현행 세법의 해석상의 혼란을 日本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원칙적으로 信託導管理論에 따라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합동운용신탁 등에 대해서는 信託實體理論을 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상세한 내용은 제Ⅲ장 주요국의 신탁의 종류와 세제에서 설명).

11) 신탁업법 제11조

같은 특별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의 원본이나 이익의 보전·보족의무를 갖는 수탁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信託導管理論의 적용이 합당하다.

- ③ 현행 세법상 신탁이익의 분배에 있어 合同運用金錢信託에서의 신탁이익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15%가 源泉徵收된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의 분배이익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非課稅된다¹²⁾.
- ④ 信託導管理論에 따른 特定金錢信託과 合同運用金錢信託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용수입 및 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 개인수익자 및 법인수익자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는 <表 V-1>과 같다.

<表 V-1> 特定金錢信託과 合同運用信託의 比較

	特定金錢信託	合同運用信託
○ 신탁재산의 운용수입 - 채권 등의 이자 - 주식·채권의 매매의 등 - 원천징수세액의 처리	- 20% 원천징수 - 비과세 - 원천징수 익월 10일 환급조정	- 20% 원천징수 - 비과세 - 원천징수 익월 10일 환급조정
○ 신탁이익의 분배 - 개인에게 분배 · 채권 등의 이자 · 대출이자 · 매매차익 - 법인에게 분배 · 채권 등의 이자 · 대출이자 · 매매차익	· 15% 원천징수 · 25% 원천징수 · 비과세 · 15% 원천징수 · 25% 원천징수 · 비과세	15% 원천징수 20% 원천징수

1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및 제2항. 종전의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합동운용금전신탁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은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하였다. 이는 합동운용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의 개별적 규정(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으나, 단독운용의 특정금전신탁은 총칙적 규정(소득세법 제4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현행 세법규정상 특정금전신탁 또는 합동운용신탁 등 신탁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신탁과 관련된 원천징수규정은 신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信託實體理論의 主張

- ① 所得稅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특정, 불특정의 구분이 없이 「내국 법인으로 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이라고 규정함바, 단독운용 형태의 特定金錢信託에 信託導管理論을 적용해 소득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 ② 信託導管理論을 적용하게 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信託所得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회사가 아닌 제3자(신탁회사에 대한 대출이자 등의 지급자)가 된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 ③ 國民株信託의 경우 원본보전·이익보존계약이 없는데도 合同運營方式의 不特定金錢信託으로 간주하여,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여 분배되는 이익은 10% 源泉徵收되고 있다¹³⁾. 따라서 원본보전·이익보존의 특약이 합동운용신탁의 조건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金錢 以外的 信託(實物信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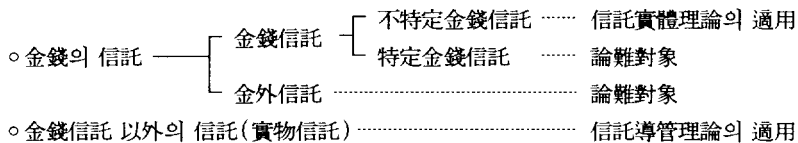
實物信託은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¹⁴⁾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황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러한 신탁에는 신탁재산의 個體性이 강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도 單獨運用의 방식이 채택된다. 따라서 實質課稅의 原則上 經濟的 效果가 歸屬되는 수익자(또는 위탁자)를 과세주체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信託導管理論에 의하여 信託所得은 그 원천에 따라 讓渡所得, 不動產貸貸所得, 利子所得, 配當所得 또는 非課稅所得 등으로 구분 과세된다.

13)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다목. 종전에는 국민주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이자소득이었다.

14) 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토지와 그 정착물(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을 포함한다(신탁업법 제10조).

單獨運營形態가 일반적인 實物信託의 경우 舊相續稅法에 의한 상속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法適用上 混亂을 招來할 可能性이 존재했다. 舊相續稅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¹⁵⁾, 合同運用信託의 대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영업장을 상속재산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¹⁶⁾. 따라서 단독운용되는 실물신탁의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부재인 상태이었다. 이 문제점에 관해서는 美國, 日本과 같은 국가에서 信託導管理論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탁업계에서도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 信託導管理論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탁재산이 실제로 소재한 곳을 그 소재지로 보아야 하며, 이는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문화하여 개정되어 문제점을 해결하였다¹⁷⁾.

신탁의 종류에 따른 개별적인 信託實體理論과 信託導管理論의 적용에 관한 주장은 첫째, 금전신탁 중 不特定金錢信託(合同運用金錢信託)의 경우는 信託實體理論을 적용하여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으로 課稅하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금전의 신탁이 아닌 실물신탁의 경우 信託導管理論을 適用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둘째, 금전신탁 중 特定金錢信託(單獨運用金錢信託)의 경우와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金外信託)의 경우는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5) 舊 상속세법 제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조

16) 舊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

17) 실체이론에 따르면, 신탁수익권이 상속되기 때문에 수익권을 가진 자의 소재지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로 결정된다.

2. 信託稅制의 現況

가. 所得稅 및 法人稅

현행 세법에 의하면 實質課稅의 原則에 근거해 信託의 特性상 信託所得의 귀속자는 수익자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信託재산으로부터의 소득 즉, 信託所得의 성격에 관하여는 법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해석상 및 법 적용상의 애매모호한 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信託所得의 歸屬

信託의 본질상 信託재산의 수탁자는 信託재산을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信託재산을 管理·處分해야 하고, 그 信託재산의 관리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歸屬시켜야 한다. 따라서 과세제도의 대원칙인 實質課稅의 原則上 信託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수익자가 되어야 하며, 현행 세법은 信託所得에 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문화하고 있다.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所得·收益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國稅基本法 제14조 제1항).
- ② 信託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信託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所得稅法 제46조 제5항).
- ③ 信託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信託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信託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함(法人稅法 제4조 제1항).
- ④ 信託業法 및 證券投資信託業法의 적용을 받는 法人(信託회사)의 信託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信託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法人稅法 제4조 제2항).
- ⑤ 信託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信託재산에 귀속되

는 소득(信託財産 歸屬分)과 기타의 소득(固有財産 歸屬分)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法人稅法施行令 제4조).

이와 같이 현행 세법상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信託所得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익자가 당연히 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信託財産을 管理·處分하는 신탁자인 신탁회사와 信託所得의 최종취득자인 수익자에게 동일소득에 대하여 二重課稅되는 것을 防止하는 취지의 당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信託財産의 所得區分

信託所得의 歸屬者 즉, 納稅義務者에 대해서는 明文化되어 있는 데에 반해, 현행법상 信託所得을 실질적인 내용별로 구분하여 源泉徵收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의 未備로 말미암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國稅基本法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¹⁸⁾ 한편, 所得稅法에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信託(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 다)의 利益”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⁹⁾.

이 같이 세법 규정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기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信託所得은 모두 ‘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勤勞所得,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賃貸所得, 讓渡所得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여부, 원천징수율 및 시기, 종합과세여부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信託所得의 구분에 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19)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5호

가) 發生源泉에 따라 所得區分을 해야 한다는 見解

이는 신탁의 본질에 관한 信託導管理論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管理·處分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수익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그 發生源泉에 따라 區分하여야 하며,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만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이 각기 다른 소득을 一括的으로 利子所得으로 課稅하는 것은 課稅衡平上 不當하다고 할 수 있다. 國稅廳의 有權解釋(所得 46011-1205, 1993. 5. 1)은 實質課稅의 原則上 소득발생원천에 따라 구분과세하도록 하여 이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利子所得으로 課稅해야 한다는 見解

이 견해는 信託實體理論에 근거하여, 信託所得의 구분에 있어서 그 발생원천을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의 지급은 '신탁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주장이다. 國稅廳의 有權解釋(所得 22601-258, 1991. 2. 8)은 舊 소득세법에 따라 合同運用信託인 경우에는 20% 分離課稅하고 그 외의 신탁은 기타의 利子所得으로 보아 25% 源泉徵收 후 綜合課稅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자소득으로서의 과세주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信託所得의 源泉徵收

현행 세법에서는 채권 또는 증권 이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신탁재산의 운용자(소득지급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이자 등의 信託所得을 지급하는 때 즉, 信託所得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지 않고²⁰⁾,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수익

20)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100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원천징수세율은 개인인 수익자의 경우는 100분의 15이고, 법인인 수익자에게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한다²²⁾.

나. 相續稅 및 贈與稅

1) 相續財產의 所在地

현행 相續稅 및 贈與稅法(이하 ‘상속세법’이라 함)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아닌(비거주자)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으며²³⁾, 그 과세관할 세무서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相續稅法 제6조). 따라서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소재지는 금전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을 인수한 수탁자의 영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반면에,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탁재산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는 舊相續稅法이 合同運用信託에 대해서만 수탁자의 영업장의 소재지라고 규정한 것에 비해서 한층 개선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신탁재산인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자상 당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은 이자소득인 신탁 수익의 수입시기를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2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법인세법 제39조
-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령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7호

2) 公益信託財産의 相續稅 및 贈與稅

相續稅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공익단체에의 기부 재산과 각종 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반환일시금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相續稅法 제12조 및 제46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출연하여 公益事業 및 社會福祉事業에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는 公益信託制度가 있다. 본래 公益信託이란 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기타 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信託法 제65조) 공익법인처럼 독립된 법주체를 창설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재산을 귀속시켜 그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명시된 공익목적에 맞게끔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舊法과 달리 공익신탁에 대해서도 相續稅 및 贈與稅의 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된 법개정을 하였다(相續稅法 제17조 및 제52조).

3) 他益信託의 課稅

위탁자 이외의 제3자가 수익자가 되는 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이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節稅의 可能性이 존재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실시된 이후 他益信託은 金融所得의 綜合課稅를 回避하고 동시에 贈與의 目的을 達成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현행 세법규정에는 他益信託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⁵⁾. 피상속인이 신탁

25)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他益信託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²⁶⁾. 또한 他益信託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贈與擬制)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을 실제로 받을 때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만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에 나누어 받을 때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他益信託의 경우에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며, 그 이후 수익자가 비로소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⁷⁾.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他益信託은 신탁의 수익에 대해 먼저 所得稅를 賦課하고 이와는 별도로 수익자에게 受益權을 贈與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他益信託의 원본과 수익의 수익권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원본 또는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신탁의 만기 또는 이자지급 시기에 수익자가 원본 또는 수익을 실제로 수령할 때 그 실제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贈與稅를 課稅한다. 그런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定期的으로 年金의 形式으로 수익을 지급 받는 他益信託의 경우에도 첫번째 지급 받는 때에 미래에 지급 받을 잔여수익에 대해서도 함께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⁸⁾. 또한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그 사망일 전체에 대해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한다²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기준은 원본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원본의 가액을 연 10%로 할인한 금액을 贈與價額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으로 본다. 수익은 확정배당의 경우에는 원본과 마찬가지로 연 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며, 實績配當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을 一律적으로 원본의 10%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있다³⁰⁾.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VI. 信託課稅制度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1. 所得稅 및 法人稅

가. 現行 規定上的 問題點

1) '信託의 利益'의 本質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재산의 調達과 運用方法에 따라 소득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信託所得에 대한 課稅問題는 金錢·實物信託의 여부, 單獨·合同運用信託의 여부, 特定·不特定運用信託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所得稅法에서는 '內國法人으로부터 받은 信託의 利益'은 利子所得이고(第16條 第1項 第5號), '內國法人으로부터 받은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은 配當所得이라고(第17條 第1項 第5號) 단순히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세법의 어느 부분도 신탁의 이익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을 앓고 있어서 法解釋 및 適用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이자소득이라는 주장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國稅廳의 有權解釋(所得 22601-258, 1991. 2. 8.)은 舊 所得稅法 제14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同法 施行令 제193조에 근거해 不特定金錢信託(合同運用信託)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20%의 源泉徵收稅率을 適用하여 分離課稅하며, 不特定金錢信託 以外의 信託은 기타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5% 源泉徵收하고 綜合課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권해석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

리상의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동일한 이자소득이면서도 하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20% 分離課稅하며 다른 하나는 2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한다는 差等課稅를 함으로써 課稅衡平性을 저해하는 법해석이었다. 이러한 해석상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有權解釋(所得 46011-1205, 1993. 5. 1.)은 特定金錢信託 및 金外信託에서 발생한 소득은 發生源泉에 따라 實質課稅한다는 신탁과세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소득세법상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은 합동운동되는 不特定金錢信託의 수익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合同運用 不特定金錢信託의 경우 수탁자는 최소한의 원본보존을 하고 확정금리상품에는 이익보전을 하여 예금과 그 기능상 동일하므로 소득구분상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유권해석도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5%'(所得稅法 제129조 제1항 다목)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解釋上的 混亂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로, 경제학적 이자란 자본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의 사용대가로서 원본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金錢 또는 기타 代替物을 의미한다. 所得稅法 제16조에 열거된 利子所得은 이러한 경제학적 이자이론에 기초하여 규정되고 있으므로 信託所得이 부동산 매매로 인한 讓渡所得인 경우에 부동산의 賣買差益을 이자소득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과세측면에서도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행 세법논리에 합당하지 않다.

2) 源泉徵收 義務者와 徵收時期

信託의 課稅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그 소득의 發生源泉을 달리하므로 원천징수하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신탁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所得稅法 施行令 제45조에서는 신탁의 수익만을 규정함에 따라 法

適用上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논리상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 또는 실물신탁의 경우 所得稅法 제16조에 열거된 이자소득을 발생원천으로 하는 채권의 형태로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利子所得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不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는 所得稅法 施行令 제4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소득의 수입시기를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즉, 신탁의 수익 지급일 또는 신탁계약기간 연장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로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單獨運用方式의 特定金錢信託이나 實物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운용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가 직접 수익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느냐 또는 지급받은 이자를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소득지급자가 實質課稅原則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신탁은 ‘委託者와 受託者의 特別한 信任關係에 의하여 위탁자가 特定の 財產權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信託財產을 管理·處分하게 하는 法律關係’(信託法 제1조 제2항)로 규정되고 있는바 첫째, 소득지급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소득지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 源泉徵收義務가 發生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신탁관계상 수익자에게 신탁에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셋째, 法人稅法에서는 신탁회사의 신탁재산분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¹⁾, 넷째, 조세징수 절차상 소득지급자가 수익자를 각기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2호

여 조세징수 비용이 증가되는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즉, 신탁계약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1995년 12월 30일에 개정된 所得稅法 施行令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명기되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租稅連脫 防止를 위하여 모든 信託財産(특정유무, 합동유무를 불문)에 歸屬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신탁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고 源泉徵收를 하되, 法人稅法 施行令 제100조의 5에 의거해 당해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法人稅를 差減한 후 納付 또는 還給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익자에게 소득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세법상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實體理論에 의하면 신탁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할 수 있지만 導管理論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단순히 신탁의 수익을 전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정법상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이론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할 것이다.

3) 他益信託의 類型別 課稅

신탁의 수익자의 유형(즉, 위탁자 본인 또는 제3자)에 따른 신탁의 유형은 自益信託, 完全他益信託, 部分他益信託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행 세법상의 신탁관련규정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信託의 利益은 利子所得,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은 配當所得으로 區分하고 있다²⁾.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상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의 이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탁의 수익'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³⁾. 따라서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自益信託 및 他益信託에 있어서의 신탁원본의 이익 및 신탁수익의 이익에 대한 課稅區分은 다음과 같다.

〈表 VI - 1〉 信託元本の 利益 및 信託收益의 利益에 대한 課稅區分

	○ 원본 : 위탁자 ○ 수익 : 위탁자 (自益信託)	○ 원본 : 제3자 ○ 수익 : 제3자 (完全他益信託)	○ 원본 : 위탁자 ○ 수익 : 제3자 (部分他益信託)	○ 원본 : 제3자 ○ 수익 : 위탁자 (部分他益信託)
소득세	○ 신탁의 수익 : 위탁자의 소득	○ 신탁의 수익 : 제3자의 소득	○ 신탁의 수익 : 제3자의 소득	○ 신탁의 수익 : 위탁자의 소득
상속세 및 증여세	○ 원본 및 수익 : 위탁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 ○ 평가 : 신탁재산 의 가액	○ 원본 및 수익 : 증여세의 과세 대상 ○ 평가 : 신탁재산 의 가액	○ 원본 :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수익 : 증여세 과세대상 ○ 평가 - 원본 : 상속일 현재의 가액 - 수익 :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할인액의 총계 (할인율:10%)	○ 원본 : 증여세 과세대상 ○ 수익 : 위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평가 - 원본 : 증여일 현재의 가액 - 수익 :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할인액의 총계 (할인율:10%)

첫째, 신탁의 원본과 신탁의 수익이 모두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自益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이며, 신탁의 수익은 세법상 위탁자의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과세상 아무런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둘째로,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信託元本 및 收益의 受益者가 되는 完全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위탁자는 課稅對象에서 완전히 除外되며, 제3자

3)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과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게는 신탁의 원본의 이익 및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 贈與稅를 課稅하게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증여의 시기는 신탁원본에 대해서는 원본을 직접 받을 때, 그리고 신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직접 받을 때이며,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을 때는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이다. 그러나 원본 및 수익의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증여시기가 원본 및 수익의 수령시기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어 과세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인 제3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에게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二重課稅의 논란이 있다.

셋째로, 部分他益信託으로서 위탁자가 신탁의 원본의 수익자이고 제3자가 신탁 수익의 수익자인 경우이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이므로 위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수익자인 제3자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所得稅와 신탁의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贈與稅가 賦課되게 된다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탁자가 본인을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로 하고 이를 수령한 후에 동일 금액을 제3자에게 증여할 때와 비교해서 실질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부담액의 차이가 있다는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⁵⁾. 이러한 유형의 他益信託의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의 원본의 수익자인 채로 제3자에게 신탁의 수익을 증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탁의 계약을 통해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제도하에서 세금부담을 절감하자는 의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행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課稅衡平上의 問題點이 발생할 可能性이 높다.

넷째로, 제3자가 신탁의 원본의 수익자이고 위탁자가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가 되는 部分他益信託의 경우에 위탁자에게는 신탁의 수익에 대

4) 동일 취지의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으로는 재경원 재산 46014-446, 1995. 12. 4. 및 국세청 재산 46014-2023, 1995. 8. 8. 가 있음.

5) 과세부담의 차이는 위탁자와 제3자간의 소득세율의 차이뿐만 아니라 소득세율과 증여세율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해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되며, 제3자에게는 신탁의 원본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의 시기는 원본을 받을 때이고 수회 분할하여 받을 때는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이다.

4)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課稅

제3자를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他益信託에 대한 과세규정은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이 위탁자에 의해 取消不可能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取消不可能한 他益信託契約⁶⁾에 의해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取消可能한 信託契約⁷⁾으로 인한 제3자인 수익자에 대해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과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法規定의 미비로 法適用에 混亂을 빚고 있다. 取消可能信託의 경우에는 取消不可能信託의 경우와 비교하여 신탁설정의 목적 및 제3자인 수익자의 신탁에 대한 법적·권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가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 改善方案

1) 信託利益의 所得區分 細分化

현행 所得稅法 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을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 한하여 소득발생 원천별로 세분화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탁

6) 미국의 Irrevocable Trust제도와 유사하다.

7) 취소 가능한 타익신탁은 美國의 Revocable Trust제도로써 신탁자가 주로 재산증식 또는 유언검증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信託制度이다.

의 이익의 본질에 대한 해석상 및 과세상 혼선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日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所得區分을 細分化하면 法解釋이 용이해지므로⁸⁾ 현행 세법에서도 金錢信託과 財産信託에 대한 明文化가 시급하며, 금전신탁도 單獨運用 特定金錢信託과 合同運用 不特定金錢信託으로 區別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⁹⁾.

첫째, 신탁재산의 운용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合同運用하는 信託商品(不特定金錢信託)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경우 元本補填 또는 利益補足を 하는 등 그 신탁이익이 은행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매우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不特定金錢信託의 이익은 소득발생원천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으로 구분하고, 다만 신탁회사가 合同運用하는 신탁상품 중에서 공채 및 사채와 기타 유가증권 대출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상품 중 당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처럼 당해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課稅衡平上 적합하다 할 것이다¹⁰⁾.

둘째, 신탁재산의 운용을 특별히 지정하는 信託商品(特定金錢信託)에서 발생하는 신탁의 이익은 國稅基本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된 去來內容에 관한 實質課稅原則에 의거하여 소득발생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한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대출이자 등은 利子所得으로, 부동산 임대료수입은 不動産賃貸所得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은 讓渡所得으로, 주식배당금은 配當所得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유가증권의

8) 日本의 세법은 실질소득자 과세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그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합동운용신탁, 적격퇴직연금신탁, 증권투자신탁).

9) 이는 과거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상으로만 불특정금전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을 구별하여 다르게 과세하던 것을 세법상으로 명문 규정화하는 것이다.

10) 일본 소득세법에서는 합동운용신탁의 경우에 이자소득으로 구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이란... 합동운용신탁 혹은 공사채 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을 말한다.

제24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이란... 공사채투자신탁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관한 소득을 말한다.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非課稅所得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또한 신탁회사에 귀속되는 신탁수수료를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한 必要經費로 간주하여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총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2) 信託利益의 源泉徵收制度의 補完

가) 信託利益의 源泉徵收時期

合同運用 金錢信託 이외의 신탁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이익을 소득발생 원천별로 소득구분하여 과세한다면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있어서 소득구분이 없이 '신탁의 수익'의 수입시기로 표현되어 있는 所得稅法 施行令의 규정을 소득구분의 현상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¹¹⁾.

첫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을 所得發生 源泉別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구분된 신탁이익에 대해서만 所得稅法 施行令 제45조를 適用해야 한다. 즉, 신탁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所得稅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 이자의 원본 전입일, 계약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한다.

둘째, 이자소득인 신탁이익의 원천징수와 같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된 신탁이익에 대해서도 그 源泉徵收時期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탁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所得稅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 분배금의 원본 전입일, 계약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한다¹²⁾.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6호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나) 信託財産歸屬 債券利子金額에 대한 源泉稅 還給調整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으나, 세액의 脫漏를 防止하고 綜合課稅를 明確하게 施行하여 公평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源泉徵收하도록 하는 特例規定을 두고 있다¹³⁾. 즉, 신탁재산도 채권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과세함으로써 流通 경로상의 개인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실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후, 또 다시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면 二重課稅를 초래하게 되므로 法人稅法은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還給調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信託業 兼營 金融機關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구분된 信託利益의 支給時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①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② 신탁재산이 先利子支給方式의 債券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¹⁴⁾.

신탁재산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조정하는 과정에서 法人稅法 제39조에서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도 法人稅가 된다. 따라서 신탁이익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만을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에 있어 개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에 각기 다르게 취급하고자 하는 법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탁에서 조달된 受信資金은 일반적으로 所得稅法 제46조의 채권 등에 주로 운용되는 바, 채권 등에 운용할 때에는 채권발행자로부터 원천징수 당하므로 신탁

13)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2항과 제4항 및 제100조의 5 제1항,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명문화되어 있음.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 제3항

의 수익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또다시 所得稅法 第46條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조정과 비교해 衡平性을 잃은 課稅制度라 할 것이다.

다) 信託通帳의 源泉徵收對象인 債券에의 包含

양도가능한 이자소득 발생의 有價證券은 채권시장에서의 讓渡·讓受가 가능하므로 중도매각을 통한 개인의 綜合課稅를 回避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법인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 채권 등을 법인에게 中途賣却時에 채권보유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特例條項을 新設하였다¹⁵⁾. 그러나 所得稅法 第46條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法 제16조 제1항 제5호)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同法 施行令 제102조에 의해 신탁 중에서 開發信託受益證券만을 채권에 포함하고 있다.

신탁통장은 지명채권으로서, 이의 讓渡·讓受에 관해 소득세법의 채권에 포함시키려면 첫째, 所得稅法 第46조에 신탁의 이익을 明示적으로 포함시키고 둘째, 施行令 제102조에서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로 부각되는 신탁업무에 따라 발행되는 신탁통장의 讓渡·讓受時에 발생 가능한 課稅回避를 미연에 防止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他益信託에 대한 課稅制度 改善

가) 委託者가 信託元本の 受益者인 境遇에 所得稅의 課稅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수익)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完全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수익자

15)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에게 과세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가 되고 제3자가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가 되는 部分他益信託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위탁자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용은 위의 문제되는 部分他益信託이 위탁자가 본인 자신을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로 하여 이를 수령한 후 증여하는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에 차이가 있게 되는 不合理的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他益信託制度를 이용하여 稅負擔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아 課稅衡平上 신탁의 수익을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나) 取消可能한 信託의 課稅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取消可能信託의 경우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는 위탁자가 원본의 수익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탁을 통해 費用節減 또는 稅負擔을 줄이기 위한 것이 위탁자의 신탁이용의 주된 목적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의 수익이 제3자인 수익자에게 배분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수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세법상의 신탁과세시에는 Grantor Trust Rule에 의해 取消可能信託의 경우와 신탁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인 取消不能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이 제3자인 수익자에게 분배되더라도 이를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2. 相續稅 및 贈與稅

가. 現行 規定上의 問題點

1) 他益信託의 收益에 대한 所得稅와 贈與稅의 同時 課稅

他益信託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受贈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규정¹⁶⁾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개발된 信託商品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他益信託의 수익에 대하여 일단 소득세 과세가 이뤄졌으므로 수익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과세를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하여 이론적 주장과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수익자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⁷⁾.

첫째, 신탁의 수익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문제와 신탁의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自益信託과의 衡平上의 原理에 비추어 볼 때 所得稅와 贈與稅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自益信託의 경우에 신탁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자(즉,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자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의 가처분소득을 제3자인 타인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他益信託의 경우에만 신탁수익에 대하여 발생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면 自益信託과의 衡平課稅의 原則을 크게 違背하는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1996년말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17) 재경원 재산 46014-446, 1995. 12. 4. 및 국세청 재산 46014-2023, 1995. 8. 8.

겠다는 입법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⁸⁾.

2) 他益信託의 收益에 대한 相續·贈與稅의 課稅標準 計算方法

他益信託에서는 수익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면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고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擬制하여 贈與稅를 課稅한다. 이때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이후의 금액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것인가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에서는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贈與稅 課稅標準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換算價額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 10%의 할인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다¹⁹⁾.

이같은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金錢信託의 경우 合同運用信託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인지, 單獨運用信託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명문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용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단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을 때 금전신탁에 있어서의 적용상 문제점은 信託元本과 信託收益의 受益者가 다를 경우에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받을 장래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 평가에 있어서 실적배당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래의 수익률 및 수익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환산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나목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일반적으로 贈與稅 課稅標準을 계산할 때 부채와 같은 소극적 재산은 控除되는 것과 같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즉,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소득의 이전에 있기 때문에 他益信託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세의 과세분을 제외한 나머지 可處分所得을 贈與稅의 課稅對象으로 看做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권리이전에 따른 불가분의 부담인 원천징수세액도 신탁수익권의 이전과 함께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일종의 負擔附贈與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상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해야 하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각 연도 수입금액을 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일부 견해는 총리령(즉, 시행규칙)에서 10%의 할인을 자체가 원천징수세액의 차감을 고려한 것이므로 할인대상금액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신탁수익액 자체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법 적용상의 애매 모호한 규정에 기인하는바, 법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다시 10%의 할인을으로써 현재가치로 환산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他益信託으로서의 實績配當商品의 收入金額 計算方法

他益信託制度를 이용한 實績配當商品의 경우(평가기준일 현재 신탁 재산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은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이를 실무적으로 계산하는 데에 방법상의 異論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① 매월이자를 年複利하여 만기수익을 算出한 후 할인하는 방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법 ② 매월이자를 月複利하여 만기수익을 算出한 후 할인하는 방법 ③ 매월이자를 該當 件別로 할인하는 방법 ④ 매월이자를 單利計算하여 만기수익을 算出한 후 할인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單利計算의 경우는 흔히 사용되지 않으므로 처음 세 가지 계산방식에 의한 증여가액의 계산공식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가) 每月利子を 年複利하여 滿期收益을 算出한 후 割引하는 方法

$$\text{증여가액} = \sum_{n=1}^N \frac{\text{원본} \times [(1+0.1)^n - 1]}{(1+0.1)^n} \quad (N = \text{만기연수})$$

나) 每月利子を 月複利하여 滿期收益을 算出한 후 割引하는 方法

$$\text{증여가액} = \sum_{n=0}^{N-1} \frac{\sum_1^{12} \text{원본} \times [(1+0.1/12)^{12n+k} - 1]}{(1+0.1)^{n+1}} \quad (N = \text{만기연수})$$

다) 每月利子を 該當件別로 割引하는 方法

$$\text{증여가액} = \sum_{n=1}^{12} \frac{\text{원본} \times (0.1/12)^n}{(1+0.1/12)^n} \times N \quad (N = \text{만기연수})$$

시행규칙에서는 수익금을 원본의 가액에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單利計算 / 複利計算 그리고 年複利 / 月複利 / 該當別 割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세번째 계산방법인 매월이자를 해당 건별로 할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계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첫번째 방법인 연복리 후 할인방식은 증여가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過小評價되게 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②와 ③의 방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법시행규칙 등의 개정 내지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IMF의 영향으로 향후 예상되는 고금리상태하에서는 실적배당상품의 증여세 효과가 定期預金, 滿期支給式이나 確定金利商品 他益信託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實績配當商品의 他益信託의 제공이 빈번해 질 것이다. 이 경우 증여가액의 계산방법의 一貫性 있는 적용에 의 정립이 급선무이다. 다음의 예는 증여방법의 차이에 따른 贈與稅 負擔額의 差異를 보여 준다.

〈사례〉²¹⁾

금융자산 10억원 중 7억원을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기간은 2년, 금리는 연 12.76%(月利子支給式)이며 총 28.89%(滿期支給式)임), 각 증여방법에 따른 증여세 부담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히 預金 등으로 贈與하는 境遇

- 증여가액 : 7억원
- 증여세액 : $1\text{억원} \times 10\% + 4\text{억원} \times 20\% + (2\text{억원} - 3,000\text{만원}) \times 30\% = 141,000,000\text{원}$
- 자진신고 세액공제 : $141,000,000\text{원} \times 10\% = 14,100,000\text{원}$
- 납부세액 : 126,900,000원

② 滿期支給式 他益信託으로 贈與하는 境遇

- 증여가액 : $7\text{억원} \times 28.89\% \times 0.835 = 168,862,050\text{원}$
- 증여세액 : $1\text{억원} \times 10\% + (68,862,050\text{원} - 3,000\text{만원}) \times 20\% = 17,772,410\text{원}$
- 자진신고 세액공제 : $17,772,410\text{원} \times 10\% = 1,777,241\text{원}$
- 납부세액 : 15,995,160원

21) 사례는 윤강훈, 「타익신탁의 법적 성격과 과세문제」, 제2회 은행신탁세미나 자료, pp. 75~76에서 인용함.

③ 確定配當 利子支給式 他益信託으로 贈與하는 境遇

$$\text{—증여가액 : } \{(7\text{억원} \times (1 + 12.7\% / 12)^{24} - 7\text{억원}) \times 0.835\} / \\ (1 + 0.1)^2 = 138,856,103\text{원}$$

$$\text{—증여세액 : } 1\text{억원} \times 10\% + (38,856,103\text{원} - 3,000\text{만원}) \times 20\% \\ = 11,771,220\text{원}$$

$$\text{—자진신고 세액공제 : } 11,771,220\text{원} \times 10\% = 1,177,122\text{원}$$

$$\text{—납부세액 : } 10,594,098\text{원}$$

④ 實績配當 利子支給式 他益信託으로 贈與하는 境遇

$$\text{—증여가액 : } \{(7\text{억원} \times (1 + 10\% / 12)^{24} - 7\text{억원}) \times 0.835\} / \\ (1 + 0.1)^2 = 106,461,584\text{원}$$

$$\text{—증여세액 : } (106,461,584\text{원} - 3,000\text{만원}) \times 10\% = 7,646,158\text{원}$$

$$\text{—자진신고 세액공제 : } 7,646,158\text{원} \times 10\% = 764,616\text{원}$$

$$\text{—납부세액 : } 6,881,542\text{원}$$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實績配當 利子支給式의 他益信託을 이용하여 贈與稅를 節稅하기 위한 제도가 향후의 高金利時代에 더욱 빈번히 사용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實績配當商品의 할인율과 할인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만이 앞으로의 課稅上의 混亂을 미연에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

4)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贈與稅

위탁자에 의한 取消不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제3자인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할인액 총액에 대해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 받을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자에 의한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수익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取消可能 他益信託의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까지 받을 각 연도의 수

입금액의 할인액 총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取消不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도 신탁수익의 수익권이 수익자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어 증여시기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시기를 신탁수익을 실제로 받을 때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課稅移延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改善方案

1)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의 評價

가) 金錢信託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의 평가는 장래 각 연도의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合同運用金錢信託은 실적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割引率도 價額評價時點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장래에 받을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價額評價時點에서 未來收益率을 반드시 확정시켜야 하므로 평가일 현재 적용될 未來收益率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법에 명시하고 이것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未來의 推定收益率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납세자가 수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IMF시대의 금리 폭등 및 향후 실시될 전면적인 金利自由化의 영향으로 예금상품의 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정수익률 및 할인율을 일정률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금리와 연계시키는 방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나) 金錢信託 以外の 信託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먼저 신탁을 導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實體로 볼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신탁을 導管으로 본다면 신탁재산의 평가는 신탁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재산의 屬性에 따라 평가를 하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신탁을 實體로 본다면 신탁재산은 그 구성요소가 금전 이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더라도 相續人 또는 受贈者에게 귀속되는 것은 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자체가 아니라 신탁재산을 받을 권리인 信託受益權을 상속 또는 증여받게 되는 것이다.

金錢信託 以外の 信託(實物信託)의 경우에는 信託導管理論이 支配的이므로 이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妥當하며, 평가방법도 具體的으로 明文化하여 법적용상의 混線을 豫防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信託의 利益을 받을 權利의 贈與時期(贈與擬制)

가) 取消可能信託과 取消不可能信託의 贈與時期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33條에 의하면 他益信託의 경우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증여로 간주하며, 그 증여시기는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로 分割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 ②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로 분할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로 보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他益信託에 있어서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나누어 받을 경우 수익자가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그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장래에 받을 원본이나 수익의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수익자에게 당장 처분가능한 이득 또는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하는 모순과 장래에 발생할 이득에 대하여 미리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²²⁾.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取消可能 他益信託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발생한다.

위탁자에 의한 取消可能 他益信託의 경우 수익자가 신탁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수회 분할하여 받는 때에는 應能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때 그 각각 분할하여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위탁자(상속인)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取消不可能한 信託으로서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부여된 신탁수익권이 위탁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收益의 支給時가 아니라 信託契約時를 증여의 시기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나) 從業員退職信託

임원이나 사용인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그들을 수익자로 하여 他益信託의 형태로 운용하는 從業員退職信託은 그 목적 수행상 他益信託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相續稅 및 贈與稅法上的 贈與擬制가 되는 他益信託으로 취급할 수 없다²³⁾. 따라서 법규정상에 從業員退職信託의 경우에는 贈與時期의 看做規定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明文化해야 할 것이다.

22) 신탁이 아닌 증여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수회 분할하여 증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실제로 매번 분할 수령할 때(또는 수령하기로 한 날)를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면서 이와 경제적 효과가 똑같은 타익신탁에 대하여는 그 과세방법을 달리함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종업원퇴직신탁과 유사한 목적으로 보험금의 수령인을 종업원으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제도가 있다.

Ⅶ. 結論 및 提言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신탁이 1910년에 日本으로부터 처음 도입된 이래 주로 日本에서 판매되는 신탁상품을 모방한 상품이 개발 취급되어 왔다. 또한 信託制度는 金錢信託을 중심으로 급성장을 하여 1997年 6月 현재 시중은행의 金錢信託 受信高는 18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성장은 金錢信託에만 置重되어서 信託 本然의 機能에 충실한 實物信託商品은 그 성장의 속도가 相對的으로 不振한 상태이다. 신탁관련 세법규정도 신탁의 규모나 성장속도와 비교하여서 法適用上의 未備點 내지 矛盾點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租稅를 賦課·徵收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法律의 根據가 있어야 한다는 租稅法律主義 原則을 遵守해야 한다. 또한 이같이 엄격한 租稅法律主義 原則의 적용에서 과생되는 문제점을 과세운영상 補完하기 위하여 과세상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實質에 따라 課稅하여야 한다는 實質課稅의 原則이 세법상에 明文化되어 있다. 實質課稅原則은 소득의 實質歸屬者에 대한 과세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라는 두 원칙으로 설명되는데,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형식적인 귀속자인 受託者 대신에 수익의 最終的·實質的인 귀속자인 受益者에게 귀속되며 과세되기 때문에 신탁은 實質課稅原則이 適用되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課稅理論은 대립되는 견해인 信託 實體理論과 信託導管理論으로 나뉘어 있다. 信託實體理論은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의 주체로 인정하여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신탁회사로 받은 信託利益의 分配金은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으로 課稅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信託導管理論은 신

탁재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을 다만 수익자에게 信託收益을 分配·歸屬시키기 위한 導管으로 취급하여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며, 信託所得에 대한 과세는 분배하기 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소득의 내용에 따라 그 수익자에게 個別的으로 課稅한다는 견해이다.

현행 은행이 취급하는 신탁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不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信託所得에 관한 課稅理論으로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과세주체로 인정하는 信託實體理論을 適用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즉,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가 신탁의 대가로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總分配利益에서 信託報酬를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信託의 利益 또는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金を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은 合同運用 不特定金錢信託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單獨運用形態의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와 金外信託의 경우에는 不特定金錢信託과 달리 信託導管理論과 信託實體理論 중 어느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信託導管理論에 의하면 신탁수익으로 분배받는 소득을 신탁재산 운용내용별로 구분하여 예금이자, 채권매매이익, 주식매매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區分·課稅하게 된다. 그러나 信託實體理論에 의하면 金錢信託은 금전을 예탁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금전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당해 金錢信託에서 발생하는 利益은 모두 利子所得으로 看做된다.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金錢信託의 경우에 적용되는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의 規定이 총칙적인 규정에서는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신탁의 受益者 또는 委託者를 신탁재산 所有者로 간주하여 각 개별수익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개별적인 규정에서는 信託實體理論의 적용으로 信託所得을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管理·處分해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에서 생기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歸屬시켜야 한다. 현행 세법은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信託所得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受益者가 당연히 소득에 관한 納稅義務者로 규정되어 있다. 信託所得에 대한 納稅義務者에 대해서는 明文化되어 있는 데 반해, 信託所得을 실질적인 내용별로 구분하여 源泉徵收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法規定의 未備로 말미암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기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信託所得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 이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신탁재산의 운용자(所得支給者)가 신탁회사(受託者)에게 이자 등의 信託所得을 지급하는 때 즉, 信託所得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신탁의 수익을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개인인 수익자의 경우는 15%이고, 법인인 수익자에게서는 20%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재산의 調達과 運用方法에 따라 소득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信託所得에 대한 과세문제는 金錢·實物信託의 여부, 單獨·合同運用信託의 여부, 特定·不特定運用信託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取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신탁의 이익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의 규정을 앎고 있어서 법해석 및 적용에 있어 混線을 招來하고 있다. 이같은 課稅上의 混亂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合同運用金錢信託의 경우는 현행 규정대로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으로 看做하고, 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 한하여 所得發生 源泉別로 細分化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상 별도의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신탁의 이익의 본질에 대한 解釋上 및 課稅上 混線을 제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탁의 과세는 신탁의 종류에 따라 그 소득의 발생원천을 달리하므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신탁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하나, 세법에서는 ‘信託의 收益’이라는 용어만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적 용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不特定金錢信託의 경우에는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의 수입시기를 수익계산 기간의 만료일(신탁의 수익 지급일 또는 신탁계약기간 연장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로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單獨運用方式의 特定金錢信託이나 實物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운용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소득지급자)가 직접 수익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느냐 또는 지급받은 이자를 신탁회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을 소득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구분된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 이자의 원본 전입일, 계약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하고 둘째, 배당소득으로 구분된 신탁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과 같이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 분배금의 원본 전입일, 계약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하도록 법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完全他益信託의 경우에는 신탁수익에 대한 所得稅가 受益者에게 課稅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委託者가 신탁원본의 受益者가 되고 제3자가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가 되는 部分他益信託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委託者는 신탁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의 課稅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용은 部分他益信託이 위탁자가 본인 자신을 신탁의 수익의 수익자로 하여 이를 수령한 후 증여하는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稅負擔에 差異가 있게 되는 不合理한 結果를 招來하게 된다. 이에 대한 改善策은 위탁자가 신탁원본의 수익자이고 제3자가 신탁수익

의 수익자인 部分他益信託의 경우에는 他益信託制度를 利用하여 信託의 수익을 위탁자 본인의 綜合所得稅 課稅對象에서 除外시키고 동시에 贈與의 目的을 達成시킴으로써 전체적인 課稅負擔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課稅衡平上 위탁자에게 信託의 수익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법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자가 信託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가능 他益信託의 경우 信託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수익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없으며, 위탁자가 원본의 수익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信託을 통해 費用節減 또는 稅負擔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아 제3자인 수익자에게 배분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탁자의 수익으로 보아 所得稅를 賦課하는 規定을 明文化하여야 한다.

他益信託은 본래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受贈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을 이용하여 租稅回避의 目的으로 개발된 信託商品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有權解釋은 수익자에 대해 所得稅 및 贈與稅를 모두 賦課하는 것으로 이론상으로 볼 때 信託의 수익이 발생하여 所得稅를 課稅하는 문제와 信託의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 贈與稅를 賦課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문제이고, 自益信託과의 衡平上의 原理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6年末 相續稅 및 贈與稅法의 改正을 통해 증여세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원천징수세액을 감안하여’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겠다는 입법의 지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他益信託의 경우에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의 평가는 장래 각 연도의 收益率이 確定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合同運用 金錢信託은 實績配當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을 가액평가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問題點이 招來되고 있다. 그러나 장래에 받을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액평가시점에서 미래수익률을 반드시 確定시켜야 하므로 평가일 현재 적용될 未來收益率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법에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金利暴騰 및 향후 실시될 金利自由化의 영향으로 예금상품의 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推定收益率을 일정률로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定期預金 또는 定期積金 金利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현행 相續稅 및 贈與稅法에서는 他益信託의 경우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증여로 간주하며, 그 증여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他益信託에서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나누어 받을 경우 수익자가 최초로 그 일부를 받을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그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장래에 받을 원본이나 수익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수익자에게 당장 처분가능한 이득 또는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하는 모순과 장래에 발생할 이득에 대하여 미리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은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위탁자에 의해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 한해서 수익자가 신탁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수회 분할하여 받는 때에는 應能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수익자가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때 그 각각 분할하여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실수령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며, 또한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위탁자(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他益信託의 형태로 운용하는 從業員退職信託은 단지 그 목적수행상 타익신탁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포함되는 다른 형태의 他益信託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勤勞者들의 退職金의 確保라는 社會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점차 커져 감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들의 신탁 업무의 규모는 그 도입기간에 비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에 따라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 관계인의 숫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법적 지위, 과세 금액 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과세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각종 세법상의 단편적인 보완 내지는 개선책이 모색되어 왔다. 따라서 信託課稅의 根本問題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임기응변식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향후 예견되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탁규모의 팽창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발생의 주된 원인은 신탁에 관한 세법의 총칙 규정에서는 信託所得에 대해 信託導管理論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각론 규정에서는 信託實體理論에 따라 信託所得을 신탁상품의 구별이 없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함으로써 법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 입법을 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신탁의 발전과 다수의 신탁의 이해관계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리체계상 모순이 없는 신탁세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國內文獻〉

- 金斗千, 『租稅法』, 博英社, 1987.
- 金完石, 『所得稅法論』, 조세통람사, 1994.
- 金炫彩, 『現代稅法의 基本問題(I)』, 司法行政學會, 1986.
- 企劃調查部, 「美國의 信託業務」, 『銀行情報』, 1986. 3., pp. 44~58.
- , 「日本의 信託」, 『銀行情報』, 1986. 4, pp. 56~71.
- 南時煥, 「信託會計의 定立方案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6.
- 럭키증권, 『일본의 투자신탁』, 1994. 11.
- 배동필, 「신탁재산귀속소득과 그 과세이론」, 『서은조사』, 1996년 여름호, pp. 32~46.
- 裴瑛錫, 「신탁의 이익의 본질」, 『銀行情報』, 1991. 3, pp. 47~53.
- , 「信託所得 課稅에 관한 考察」, 成均館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 「타의신탁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 『월간 금융』, 1996. 2, pp. 72~76.
- 裴元用,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①」, 『月刊經理』, Vol. 14, No. 3, 1990. 3, pp. 56~65.
- ,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②」, 『月刊經理』, Vol. 14, No. 4, 1990. 4, pp. 66~73.
- ,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③」, 『月刊經理』, Vol. 14, No. 5, 1990. 5, pp. 96~103.
- ,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④」, 『月刊經理』, Vol. 14,

- No. 6, 1990. 6, pp. 81~88.
- _____,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⑤」, 『月刊經理』, Vol. 14, No. 7, 1990. 7, pp. 106~113.
- _____,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⑥」, 『月刊經理』, Vol. 14, No. 8, 1990. 8, pp. 92~99.
- _____,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⑦」, 『月刊經理』, Vol. 14, No. 9, 1990. 9, pp. 78~86.
- _____,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⑧」, 『月刊經理』, Vol. 14, No. 10, 1990. 10, pp. 73~84.
- _____, 「信託에 따르는 租稅負擔의 考察 (完)」, 『月刊經理』, Vol. 14, No. 11, 1990. 11, pp. 75~84.
- 배한경, 「한국신탁업의 역사」, 『은행신탁』, 1997년 제1호(창간호), pp. 47~56.
- 변종희, 「신탁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銀行情報』, 1991. 9, pp. 66~78.
- 신찬수·정창모, 『세법개론』, 세학사, 1997.
- 柳澤珠, 「美·日의 信託業 現況」, 『銀行情報』, 1989. 11, pp. 19~24.
- 李德勳, 『金融環境變化에 대응한 投資信託機關의 發展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88. 7.
- 李德勳·金址鴻·李榮九·李在雄·張忠植, 『金融環境變化에 대응한 投資信託機關의 發展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89. 1.
- 은행신탁연구회, 『各國의 投資信託制度』, 1991. 8.
- _____, 『제1회 은행신탁세미나 자료』, 1997. 8. 28.
- _____, 『은행신탁』, 1997년 제1호(창간호), 1997. 10.
- _____, 「제2회 은행신탁세미나 자료」, 1997. 11. 25.
- 李在一, 「信託所得課稅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6.
- 李喆晟, 『最新 租稅法』, 博英社, 1993.

- 全國銀行聯合會, 『日本の信託銀行制度』, 1988.
- , 『日本の信託稅制資料 모음집』, 1988.
- , 『신탁세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1995. 5.
- , 『信託制度改善 建議事項 整理 등을 위한 作業報告書』, 信託專門委員會, 1996. 11.
-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무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作業報告書』, 信託專門委員會, 1997. 7.
- 崔圭淵 譯(小林桂吉 著), 『日本の信託銀行 制度』, 全國銀行聯合會 金融經濟研究所, 1988.
- 投資信託協會, 『投信』, 제16호, 1997. 11.
- 韓國土地信託, 『不動產 信託의 理論과 實務』, 1997. 3.
- 韓國投資信託, 『英國의 Unit Trust』, 1991. 3.
- , 『美國의 Mutual Fund』, 1991. 8.
- , 『日本の 投資信託』, 1992. 2.
- 洪裕碩·李明洙, 『信託의 理論과 實務』, 經進社, 1994.

〈國外文獻〉

- 經濟法令研究會, 『信託의 實務』, (株)經濟法令研究會, 1997.
- , 『信託』, (株)經濟法令研究會, 1997.
- 三菱信託銀行信託研究會, 『信託의 法務와 實務』,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5.
- 林 宏, 『信託의 時代』,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92.
- Baumol, W. J., S. M. Goldfeld, L. A. Gordon and M. F. Koehn, *The Economics of Mutual Fund Markets: Competition versus Regula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0.
- Brown, G., *Administration of Wills, Trusts, and Estates*, Delmar Publishers Inc., 1993.
- Chevalier, J. A. and G. D. Ellison, "Risk Taking by Mutual

- Funds as a Response to Incentives," *NBER Working Paper*, No. 5234.
- EIU, *Strategic Financial Risk Management*, 1993.
- Ferrier, I. and T. Sherring, *UK Taxation of Trusts*, Tolley Publishing Co., 1995.
- Fredman, A. and R. Wiles, *How Mutual Funds Work*, New York Institute of Finance, 1993.
- Glifford, D. and G. Jordan, *Plan Your Estate*, Nolo Press (Berkley), 1995.
- Gorenberg, H.,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s*, The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1996.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Mutual Fund Fact Book*, 1993~1995.
- Kane, E. J., "What Is the Value-Added for Large U.S. Banks in Offering Mutual Funds?," *NBER Working Paper*, No. 5234.
- Koh, Youngyoul, *A Review of the Tax-loss Selling Hypothesis: New Evidence from Mutual Funds*, Ann Arbor, UMI, 1993.
- Kramer, J. L. and L. C. Phillips,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3~1994.
- Vishny, R. W.,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NBER Working Paper*, No. 5864.

信託課稅制度的 合理化 方案

金栽鎮 · 洪容植

信託財産의 運用에서 발생한 수익은 實質課稅의 原則에 따라 형식적인 귀속자인 受託者 대신에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受益者에게 귀속되어 課稅된다. 信託所得에 대한 課稅理論 중 信託實體理論에 의하면 신탁 재산을 課稅의 主體로 인정해 신탁이익의 분배금은 利子所得이나 配當所得으로 과세하나, 信託導管理論에 의하면 이익분배 전의 運用過程에서 발생한 所得의 內容에 따라 그 受益者에게 個別的으로 課稅한다.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재산의 調達과 運用方法에 따라 소득의 內容이 달라져야 하므로 信託所得에 대한 課稅問題는 金錢·實物信託의 여부, 單獨·合同運用信託의 여부, 特定·不特定運用信託의 여부, 他益信託의 경우 取消可能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첫째, 委託者가 신탁원본의 受益者이고 제3자가 신탁수익의 受益者가 되는 他益信託制度의 경우 課稅衡平上 신탁수익에 대해 委託者에게 所得稅를 부과하며,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는 委託者의 收益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他益信託의 경우에 장래에 받을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액평가시점에서 定期預金 또는 定期積金 金利와 연계시켜 未來收益率을 確定시켜야 한다.

셋째, 取消可能한 他益信託의 경우에 한해서 수익자가 信託의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수회 분할하여 받는 때에는 應能負擔의 原則에 입각하여 受益者가 실제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을 때 그 각각 분할하여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源泉徵收稅額을 차감한 實受領額에 대해 課稅하도록 하며, 또한 원본 및 수익을 수익자가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委託者(또는 그 相續人)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信託所得에 대한 기본적인 課稅의 方向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각종 稅法上에 斷片的인 補完策만이 모색되어 왔던 기존의 租稅政策에서 탈피하여 信託의 發展과 信託의 利害關係人들의 財產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論理體系上 一貫性 있는 信託稅制의 整備가 시급히 要求된다.

〈Abstract〉

New Directions for the Taxation of Trust Income in Korea

Kim, Jae-Jin and Yong-Sik Hong

Income from trust property is taxed to the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at substance'. In trust entity theory(that is, the "substance over form" treatment), trust property becomes the subject of taxation and, thus, trust income distributed to a beneficiary is taxed as either an interest income or a dividend income. On the other hand, the trust conduit theory(that is, the "flow through" treatment) states that beneficiaries must pay a tax on the distributed income from the trust.

Income retained by the trust is required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nner in which the trust property is entrusted and employed. As such, the rules for the taxing of trust incomes should be discriminatingly applied depending on whether the trusts are: (1) money trusts or non-money trusts; (2) single trusts or joint trusts; or (3) revocable trusts or irrevocable trusts. In the first case, where the grantor i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principal and a third party become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income, the grantor must pay income tax. Further, where the trust is a revocable trust, the grantor must also be levied the tax.

In the second case, the value of any future income to be derived from the trust should be discounted at a return rate, which is linked with an interest rate for a fixed term deposit.

Finally, where a beneficiary receives the trust income on an installment plan, a gift tax must be levied on the beneficiary for the income generated during the withholding period, which he or she actually receives as the dividend income from the trust.

〈著者略歷〉

金 栽 鎮

西江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Michigan State University 經濟學 碩・博士

Research Associate to the Dean, ISP, Michigan State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Consortium on Development Studies

Research Fellow, Comparative and Multidisciplinary Study Group

Research Director, Bilateral Trade Team for Michigan and Korea

Associate Director, VIPP, Michigan State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Michigan State University

現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洪 容 植

서울大學校 行政學科 卒業

美國 Michigan State University 經營學 碩・博士

起亞經濟研究所 研究委員

現 漢城大學校 經商學部 副教授

政策報告書 98-03

信託課稅制度의 合理化 方案

1998年 7月 25日 印刷

1998年 7月 31日 發行

著 者 金栽鎭·洪容植

發行人 柳一鎬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17-11310 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60番地

電話：3460-2114(代), 팩시밀리：574-9183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1998

ISBN 89-8191-114-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